

월간

재정포럼 1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11월호 제185호

- 현안분석** • •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정재호
- Dejavu and Future Dejavu: 금융위기의 반복성과 시장지배구조에 관한 단상/ 홍범교

공공정책포럼 • 지속성장을 위한 인사·조직 혁신(민간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국 조세동향 • 그리스 긴축정책 발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02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릴 10년' · 추창근</p>
<p>현안분석</p>	<p>06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 정재호</p> <p>23 Dejavu and Future Dejavu: 금융위기의 반복성과 시장지배구조에 관한 단상 · 홍범교</p>
<p>공공정책포럼</p>	<p>41 지속성장을 위한 인사·조직 혁신(민간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p>
<p>주요국의 조세동향</p>	<p>47 그리스 긴축정책 발표 외</p>
<p>정책흐름</p>	<p>57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p> <p>59 Fitch,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p> <p>64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p> <p>68 2011년 8월(누적)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p> <p>69 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p> <p>71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p>
<p>재정통계</p>	<p>75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외</p>
<p>이슈 & 포커스</p>	<p>82 세계는 지금 부유세 폐지중 외</p>
<p>권말부록</p>	<p>86 최근 5년간 『재정포럼』 총목차</p>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릴 10년’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기획심의실장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성장의 위기를 맞고 있다. ‘747’ (연간 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도약)의 MB노믹스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였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연초 성장목표는 5%였으나 지난 6월 말 4.5%로 낮춘 데 이어 다시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간연구소들은 잘해야 4%선, 그보다 더 낮은 3%대 후반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을 진작에 내놓았다.

내년에도 별로 나아질 조짐은 없다.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비관론 일색이다. 결국 MB정부 5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도 연간 7%였지만 집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그 언저리조차 가지 못한 4.3%였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성장률이 줄곧 추락해온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다.

우리 내부에서 양산되고 있는 성장감퇴 요소들이 더 문제

현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탓이 크다. 이어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닥치고, 최근 그리스가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유럽 17개국)의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등 잇따른 충격파가 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다른 어느 곳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여건 악화만이 성장 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 양산되고 있는 성장감퇴 요소들이 더 문제다. 포퓰리즘에 기댄 감성적 복지와 선부른 분배이념의 덫에 걸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은 뒷전으로 밀린 채 경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민생이 더욱 고달파졌다.

그런데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더 깊은 미로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미 복지 포퓰리즘에 포위됐다. 지난 40여년 동안 고도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가 이만한 성취를 이룬은 성장 패러다임은 지금 부정되고 반(反)성장주의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금 돈을 나눠주자는 주장만 무성하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자는 얘기가 없다. 나라 곳간이 어떻게 거덜나게 될 것인지도 알 바가 아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은 아직 아득한데 경제의 뿌리부터 굵아들게 하는 '한국병(韓國病)'이 고질화되면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릴 10년' 또는 더 오랜 상실의 시대로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빈곤이 심화되고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가구 비율)은 지난 2001년 5.3%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 2010년 14.9%까지 높아졌다. 2000년 8.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이후 급격히 주저앉아 4~5%선을 맴돈 것과 역비례의 관계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져 온 것도 마찬가지다. 빈곤과 양극화를 이유로 성장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것은 악순환만 불러오게 된다.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분배나 복지는 허구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후퇴하는 경제, 희망이 사라진 사회, 늪어가는 나라로 가는 길이다.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분배나 복지는 허구다. 성장만한 분배 정책은 없고 생산과 고용이 없는 곳에 지속가능한 복지가 존재할 수도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분배구조가 개선되어 국민 후생이 나아진다. 성장이 빈곤과 양극화의 탈출구이자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못 가진 사회적 약자들이다. 위기일수록 성장이 더욱 절실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다들 성장의 위기에 눈감고 온통 '복지 선동'에만 매몰되어 있다. 어디서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무상교육에 드는 막대한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필연적으로 가진 계층의 것을 뺏는 것도 모자라,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가

.....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분배구조가 개선되어
 국민 후생이 나아진다.
 성장이 빈곤과
 양극화의 탈출구이자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성장과 일자리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과잉복지'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실천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

떠맡아야 할 재정부담이 현재 세대의 2.4배(GDP의 11.8%에서 27.8%로 증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현재 젊은층이 장·노년층보다 더 많은 재정부담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현 세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계속 복지지출을 늘리는 공약만 쏟아내기 바쁘면서도 정작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걷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것이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번 늘린 복지지출은 다시 줄일 수가 없는 경직성을 감안하면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파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실천전략을 확립해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성장과 일자리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과잉복지'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실천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퍼주기'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곳, 적정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복지정책 또한 경제효율과 따로 갈 수 없다. 성장기여도가 낮은 복지투자 증가율은 적절히 관리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연구개발(R&D)투자 등을 늘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고 바깥 시장에서 돈을 벌어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경제의 거시적 요소창출을 제대로 할 때 소득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가 대신할 수 없고, 정부는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정신과 경쟁우위 확보의 동기를 훼손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 규제와 시장개입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KI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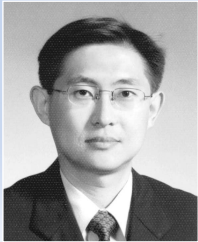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Dejavu and Future Dejavu: 금융위기의
반복성과 시장지배구조에 관한 단상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cheung@kipf.re.kr)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I. 서론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 속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였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전략기획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관리를 전략기획단에 위임하고 6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2012년부터 5~7년간 민간과 함께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으로 흩어져 있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출범시켰다.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구분 없이 통합된 연구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일관성과 효율을 증진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연구개발체계의 통합은 역량 배양에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는 제약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GATT체제에서는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규율이 매우 느슨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WTO 보조금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WTO체제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는 규범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이 개발되고 이 기술이 상용화 및 상품의 수출증가로 연결될 경우 통상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이 수출보조금 역할을 하게 되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마찰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상승하면서, 정부 지원이 국제적인 기준(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관련 내용 중에서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WTO 보조금협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는 향후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연구개발비 규모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규모(GDP) 증가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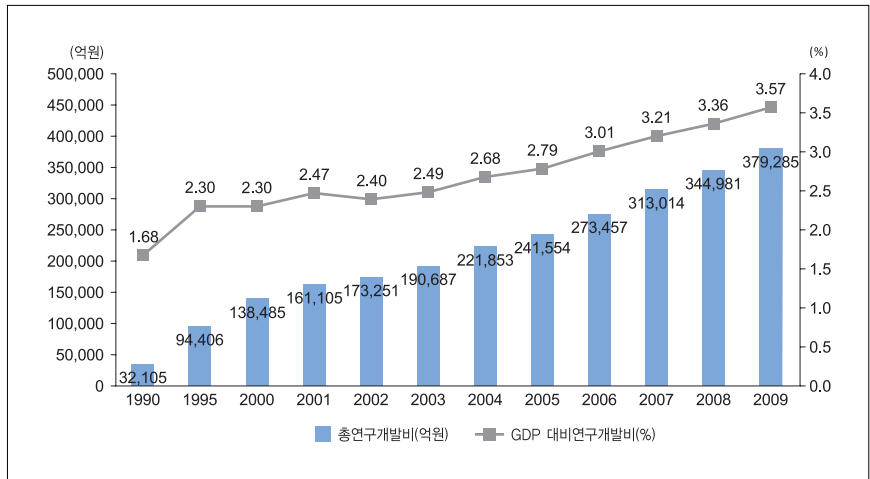
1. 총연구개발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1990년 약 3.2조원에서 2000년 약 13.8조원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엔 약 37.9조원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비해 거의 12배, 2000년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총연구개발비 규모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규모(GDP) 증가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총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 약 1.68%에서 2000년 약 2.30%로 증가하였고, 2009년엔 약 3.57%로 증가하여 1990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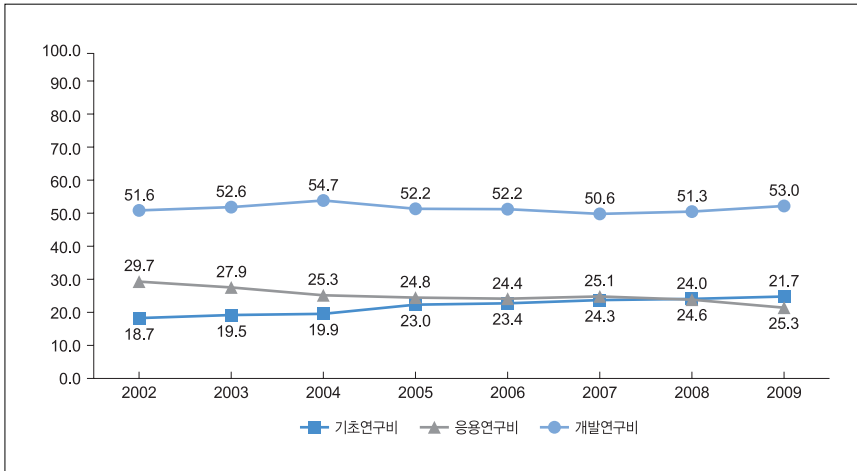
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약 297억달러로 세계 7위권이고,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7%로 이스라엘(2008년) 4.86%, 핀란드(2009년) 4.86%, 스웨덴(2008년) 3.75%에 이어 세계 4위권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¹⁾.

2. 연구개발 단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연구개발 단계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비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개발연구가 절반을 상회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구비 지원 확대로 2008년 이후 정부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응용연구비를 추월하였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2002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8.7%와 29.7%로 응용연구 비중이 약 11%p 높았으나, 2009년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중이 각각 25.3%와 21.7%로 기초연구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동일 기간 동안 개발연구비의 비중은 약 50%를 상회하며 큰 변동이 없다.

1)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외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3위임.

[그림 2]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비중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주체별 정부 연구개발예산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현황

(단위: 억원, %)

연구수행 주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기업	1,872	1,728	2,170	1,463	1,631	2,459	3,914	5,803	5,923	9,627	13,183
	(6.9)	(5.6)	(4.8)	(3.1)	(3.3)	(4.1)	(5.0)	(6.6)	(6.2)	(8.8)	(10.6)
중소기업	2,492	3,407	6,146	6,126	6,514	7,576	8,285	9,250	10,148	11,787	15,002
	(9.2)	(11.1)	(13.6)	(13.0)	(13.3)	(12.7)	(10.6)	(10.6)	(10.6)	(10.7)	(12.1)
정부R&D 투자총액	27,013	30,746	45,283	46,984	49,036	59,847	77,904	87,639	95,745	109,936	124,1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9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의 R&D 수행주체별 국가 R&D 투자 현황은 ①기업전체, ②국공립연구소, ③출연연구소, ④대학, ⑤정부부처, ⑥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각 연도.

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원 중 근로자 소득공제와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세제지원

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원 중 근로자 소득공제와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지원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개발 비용관련 세액공제 규모는 2011년에 약 2.8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지원을 위한 해당 요건의 완화와 일몰제 폐지 등으로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국세감면규모 기준 상위 5개 항목

(단위: 억원)

	감면 항목	2009	2010(잠정)	2011(잠정)
1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62,639	61,583	62,422
2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및 농축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9,211	29,967	32,142
3	R&D비용 세액공제 ¹⁾	15,535	18,597	28,161
4	임시투자세액공제 ²⁾	20,032	17,789	14,320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8,779	17,134	18,683

주: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신설(7,500억원) 등으로 2011년 감면규모 증가
2) 공제율 하향 조정(10%(과밀권역 내 3%) → 과밀권역 외 7%)으로 2011년 감면규모 감소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

5. OECD 국가 비교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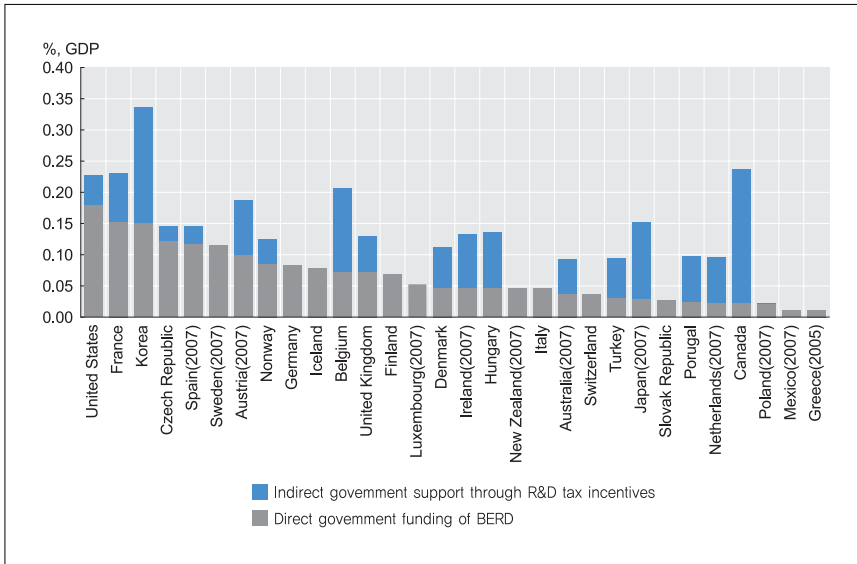
OECD(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등 직접지원과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을 합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등 직접지원의 GDP 대비 비중은 약 0.15%이고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약 0.19%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가 큰 곳은 미국, 프랑스, 체코, 스페인 등이며, 반면 캐나다, 벨기에,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간접지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독일,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멕시코, 그리스 등 11개 국가에서는 직접지원만이 사용되고 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 보조금협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림 3]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2008년)



자료: OECD, Measuring Innovation: A New Perspective, 2010.

III. WTO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1. WTO 보조금협정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 보조금협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우선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 보조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존재하고, 둘째, 이로 인해 혜택이 받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혜택을 유발하는
재정적 기여가 특정성이
있다고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생해야 한다²⁾. WTO 보조금협정은 재정적 기여에 대해 정부 자금의 직접이전³⁾, 채무부담의 잠재적 직접이전⁴⁾,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입을 포기했거나 징수하지 않은 정부 수입⁵⁾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혜택을 유발하는 재정적 기여가 특정성이 있다고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⁶⁾. 특정성과 관련하여 WTO보조금협정에서는 법적(de jure) 기준과 사실상(de facto) 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법적 기준은 법 규정에 특정 대상에 대한 보조금을 언급할 경우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기준에 의하면 법률 등에서 외관상 특정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혜택이 특정 대상에 귀속되었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WTO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및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또는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보조금 등이 지급될 때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허용보조금이 있다. 허용보조금은 2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다. 이런 보조금에는 연구개발보조금, 낙후지역개발보조금, 그리고 환경보조금이 있다. 현재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1999년에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DDA협상에서 논의가 진행중으로 허용보조금은 2000년 1월 1일자로 그 효력이 없어진 상태이다.

한편, 허용보조금이 아니면서 수출지원 또는 국산품 장려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대상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조치가능보조금은 보조금 영역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구분이 모호할 수 있어 보조금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WTO 보조금 관련 분쟁 추이와 특징

가. WTO 보조금 분쟁 추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분쟁은 지금까지 424건에 이른다.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제소된 분쟁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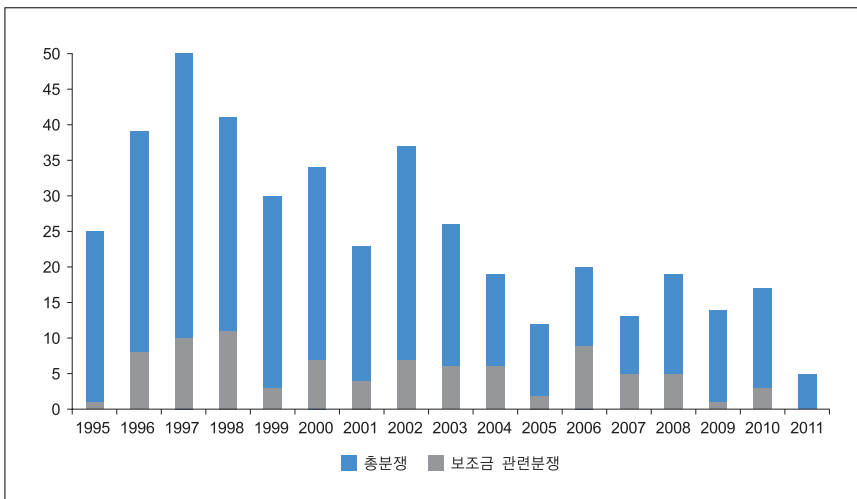
2) WTO 보조금협정 제1.1조
3) 예를 들면 무상지원 등
4) 예를 들면 대출보증 등
5) 예를 들면 세액공제, 감면 등
6) WTO 보조금협정 제1.2조

1997년에는 50건이 제소되어 WTO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분쟁이 제소되었다. 그 이후 2002년 제소된 분쟁 건수 37건을 정점으로 2004년 이후로는 약 15~20건 정도의 분쟁이 제소되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에 제소된 분쟁 424건 중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분쟁은 88건으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관련 분쟁이 전체 WTO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이후에는 20%를 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2006년에는 전체 WTO 분쟁 20건 중에서 보조금 관련 분쟁이 9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07년과 2008년에도 보조금 관련 분쟁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WTO에 제소된 분쟁
424건 중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분쟁은 88건으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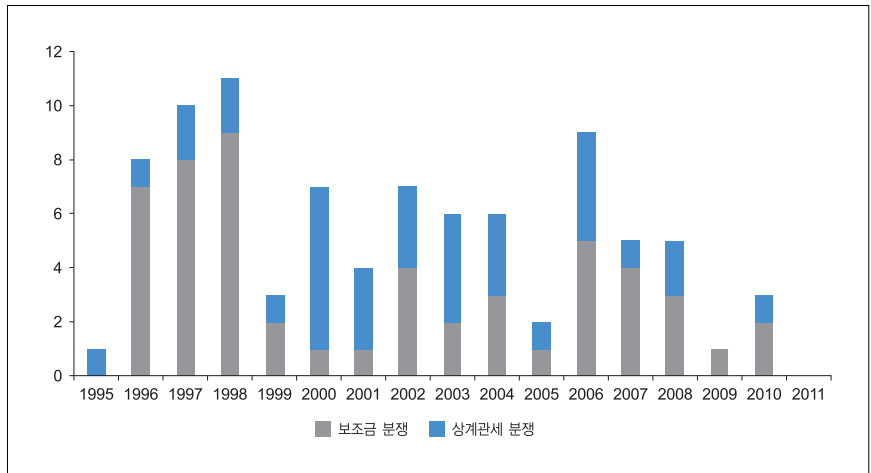
[그림 4] WTO 분쟁과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비교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분쟁 88건 중 보조금과 관련된 분쟁이 53건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상계 관세 관련 분쟁은 35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관련 분쟁도 1990년대 말 이후부터 급증하여 1998년에는 11건이 제소되어 WTO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분쟁이 제소되었고 그 이후 2006년에도 9건이 제소되어, 다른 분야의 WTO 분쟁들과 달리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WTO 체제에서는
미국이 5차례
연구개발지원에 관해
상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3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였다.

[그림 5] WTO 보조금협정 관련 분쟁 추이



주: 1. Second Complaints(DS347, 353)를 포함한 수치임.
2. DS 1, 2가 SCM 관련 소송이라고 consultation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CVD관련 분쟁사례에 해당하므로 계수에 포함함.
3.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consultation 날짜 기준
자료: WorldTradeLaw.net: <http://www.worldtradelaw.net/dsc/database/agreementcount.asp> 내용을 수정함.

나. 연구개발보조금 관련 분쟁⁷⁾

지난 GATT 체제에서는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분쟁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3차례 연구개발지원에 대해 상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모두 상계가 가능하지 않았다⁸⁾. WTO 체제에서는 미국이 5차례 연구개발지원에 관해 상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3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였으며, 나머지 이탈리아와 독일 관련된 조사는 상계 가능하지 않은 보조금 또는 상계 가능하나 지원 금액이 미미해서 실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조사에서는 미미하지만 실제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우리나라의 철강분야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0.005~0.07%의 상계관세가 도출되었고, 또 다른 철강분야 관련 상계조사에는 0.005~0.08%의 상계관세가 도출되었다. 반도체 분야와 관련 차세대 반도체사업에 대해 하이닉스 0.22%, 삼성전자 0.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앞서 언급된 연구개발 보조금 관련 사례들에서는 모두 미미한 상계관세가 부과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지원이 주목받고 있으며,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이 부분은 안덕근(2007) pp. 358~359에서 발췌·재정리함.
8) 안덕근(2007)은 호주의 산업연구개발지원, 캐나다의 연구개발공제 제도, Nordrhein-Westfalen's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상계 조사에서 상계가가능하지 않다고 판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수출보조금이 금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의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근래에는 휴대폰,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⁹⁾.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보조금 분쟁으로 크게 부각된 사례로는 항공기산업을 들 수 있다.

3. 재정지원 관련 WTO 주요 분쟁 사례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보조금 분쟁으로 크게 부각된 사례로는 항공기산업을 들 수 있다. 이는 항공기산업의 고유한 특징에 기인한다. 항공기산업은 첨단기술의 종합체로 기술, 생산, 고용 등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면서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함께 투자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요구되지만,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WTO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 캐나다 항공기 보조금 분쟁¹⁰⁾

캐나다와 브라질 사이의 항공기산업 보조금 분쟁은 양국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항공기 산업정책의 합법성을 제기함으로써 양 국가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였다.

1) 분쟁 배경 및 사안

브라질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항공기산업 보조금사건(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이하 'Canada-Aircraft' 사건)에서 브라질 정부는 1996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Technology Partnerships Canada(TPC)는 사실상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Defense Industry Productivity Program(DIPP)를 계승한 프로그램으로서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브라질은 DIPP하에서 총 2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항공기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명목상 방위산업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실체는 거의 모든 자금이 민간에 지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환경기술, 생명공학, 정보통신 및 신소재, 항공 및 방위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항공산업 부문이 거의 전적인 지원의 수혜대상이 된

9) USTR(2006)과 USTR(2011) 참고.

10) 이하 부분은 안덕근(2007), pp. 357~384에서 발췌·재정리함.

11) 브라질은 TPC Annual Report (1996~1997)에서 "TPC funding is intended to cover outstanding commitments under the Defence Industry Productivity Programme (DIPP)"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우선 TPC 지원이 정부에 의한 재정적인 기여로서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는 점과, TPC 사업성격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상용화 직전 단계 상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점 등을 감안할 때 TPC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상기 지원이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TPC사업 연례보고서, 캐나다 산업자원부 자료에서의 언급, 기타 고위 정부 공무원들의 발언에서 캐나다 항공산업의 수출기여도와 수출증가 가능성, TPC를 통한 수출증대 추진 등에서 수출보조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TPC가 기초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시도하는 조치로서 65개 사업에 지원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캐나다는 TPC의 선정 기준에 수출증대 요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TPC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수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출과의 연계성을 부인하였다. TPC 연례보고서 등에서 언급한 수출증대 취지는 전반적인 기술력 강화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항공기산업의 수출편향성은 독특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항공기산업이 가장 개방되고 세계화되어 있는 산업부문이며, 높은 수출의존도는 전반적인 캐나다 경제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TPC 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패널 및 상소기구 판결

패널은 우선 TPC 지원이 정부에 의한 재정적인 기여로서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수출보조금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de jure) 성격보다는 사실상(de facto)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보조금이라고 판결하였다. 특히 패널은 증거자료들로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홍보나 기획에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면서 TPC에 의한 금융지원이 사실상 수출촉진을 위해 “기획(designed and structured) 되어진” 수출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패널은 항공기산업 부문의 TPC 지원이 높은 수출잠재력을 가지는 상용화 직전단계의 사업들에 대해 제공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¹²⁾.

한편, 이에 대해 캐나다는 상소하였지만 상소기구에서도 캐나다의 TPC 프로그램이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패널 판정을 재확인하였다. 캐나다는 분쟁 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TPC 프로그램을 재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캐나다의 이행조치에 대해 브라질은 여전히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행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기각되었다.

12) TPC 시행 부서에서 발간된 TPC Business Plan에서 언급된 “항공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원칙 또는 방식이 높은 수출잠재력을 가지는 상용화 직전단계의 사업들을 발굴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패널에 의해 판정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TPC Annual Report에서 언급된 “TPC 지원 수혜기업에 의한 생산품의 80%가 수출되고 있으며, TPC가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신화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지부심을 가진다”는 등의 표현 등이 있다. TPC 주관사업단과 캐나다 산업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언급한 TPC 관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었다.

3) 캐나다 정부의 정책 수정과 시사점

상기 분쟁 이후에 진행된 캐나다는 TPC를 수정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하였다. 그 이후 TPC 연례보고서에서는 항공기산업 분야의 지원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삭제되고 매우 간결하게 사업성과 지원 총액만 기술하고 있다.

캐나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국제통상규범 위반 판정으로 불시에 중단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 WTO 보조금 규범의 합치성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패널 판정에서 검토되는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준은 향후 우리가 유사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온라인 또는 보도자료 등의 공표자료 준비 및 시행과정과 관련한 절차 마련에 중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 미국 및 유럽연합 항공기보조금 분쟁사례

1) 분쟁의 배경

1916년에 설립된 보잉(Boeing)사는 미국 정부와의 수많은 군수 계약을 성사시키며 급성장하였다. 민간항공시장에서 보잉사의 독점에 대응하여 1969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에어버스(Airbus)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보잉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군수계약과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항공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에어버스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전 세계 항공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사실상 양분하게 되었다¹³⁾.

대형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증가하자, 1992년 미국과 EC는 민간항공기 무역에 대한 양자협약(Bilateral EU-US Agreement on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을 채택하여 합의된 수준 내에서만 자국의 항공기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접 지원수준은 총 개발비용의 33%로 국한하고, 간접적인 항공기 연구개발 보조금은 총매출액의 3% 이내로 한정하였다. 양국은 또한 양자협약을 통해 상호 인정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양국은 법적 보복이 상대국과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 WTO 보조금 규범의 합치성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13) 100인 이상의 승객 혹은 그에 준하는 화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민간항공기(Large Civil Aircraft: LCA)를 제조하는 회사로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유일하다.

미국 정부는 당시 약 4만명을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보잉사를 대신하여 EC를 WTO에 제소하였다.

무역에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자협약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교환과 연례모임을 통해 양자협약 내용 준수를 꾸준히 확인해왔다.

1970~80년대에는 미국의 보잉사가 전 세계 대형 민간항공기시장의 75%를 장악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면서 막대한 지원을 통해 에어버스사의 A300 시리즈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보잉사를 재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에어버스사의 연간 수주가 보잉사를 웃돌면서 미국의 불만은 커지게 되었다. 2004년에 1992년 양자협약 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과 EC측 협상단이 모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일방적으로 1992년 협약 을 파기하고 유럽이 그동안 에어버스사에 지원한 모든 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DS 316).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착수지원금, 대출 특혜, 공장설립 지원, 기업회계조정 조치 및 항공기 연구개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에어버스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A380기에 집중 지급되어 경쟁모델인 미국의 보잉 787과의 경쟁관계를 왜곡하였다는 것이다¹⁴⁾. 미국 정부는 당시 약 4만명을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보잉사를 대신하여 EC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런 미국의 제소에 EC도 같은 날,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보잉사에 지원한 수출 보조금에 대해 맞제소하였다(DS 317).

2) 에어버스 분쟁(DS 316)의 주요 쟁점과 판정

미국은 에어버스 소송을 통해 EC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영국의 4개국 이 약 40여 년 동안 에어버스에 지급한 300개가 넘는 추정보조금(alleged subsidies) 사례를 지적하였다. 패널은 이 많은 보조금 사례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과 성공적 판매 시에만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착수지원금 ②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대출 특혜 ③ 공장설립, 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을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④ 기업 회계조정 조치 ⑤ 연구개발 보조금.

결과적으로 패널은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대출특례만을 제외하고 상기 모든 보조금프로그램이 특정성을 띤 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 6월 30일 WTO 패널은 미국의 EC 제소에 대해 미국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EC는 7월 21일 패널의 판결에 대해 상소기구에 항소하였고, 미국 역시 8월 19일에 항소에 동참했다.

사례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패널 판정이 몇 년간 지연되었듯이 상소기

14)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A380에 지급된 6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은 단일 민항공기 기종에 지급된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금이다.

구 역시 패널판정 이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2011년 5월 18일에야 판결문을 공개했다. 상소기구는 대체로 패널판정을 수용한 반면에 일부 판정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정을 수정하거나 바꿨었다.

3) 보잉 분쟁(DS 353)의 주요 쟁점과 판정

EC는 2004년 미국의 EC 제소에 대응하여, 같은 날 미국 정부가 NASA와 국방부, 상무부 등을 통해 보잉에 주로 연구개발 보조금의 형태로 1992년 이후에 23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Foreign Sales Corporations 법안을 통해 매년 2억달러 이상의 세제 혜택을 주었고 최근에는 보잉사의 787 여객기 개발에 조세 감면, 기반 시설 제공 등의 형태로 32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역제소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연구개발과 관련 EC는 NASA 항공비행 연구개발프로그램이 NASA와 보잉사 간에 몇 개의 조달계약 및 우주법 협정(Space Acts 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잉사의 대형 민간항공기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패널은 문제가 된 연구개발프로그램이 오로지 보잉사의 혜택과 사용만을 위한 것이기에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패널은 보잉사가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ASA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급받은 것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보았다. 결국 패널은 EC가 제기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이 보조금협정 제1조와 제2조가 규정하는 특정적인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외에도 EC는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보잉사와 국방부 간에 체결된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부 자금의 직접 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NASA와 국방부로부터 받은 항공 및 비행 연구개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및 워싱턴 주정부 및 지방자치체의 세제 및 보조금이 유럽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2011년 3월 31일에 지난 7년간 지속되어온 EC와 미국의 항공기 산업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또한 불법이라는 WTO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약 9개월 전 EC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판정에 이은 것이다.

동 판결에 대해 EC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미국 역시 7년을 끌어온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이 '도덕적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EC가 보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보조금 가운데 약 80%를 WTO가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잉사가 받은 부적절한 보조금의 규모는 27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에어버스는 200

2011년 3월 31일에
지난 7년간 지속되어온
EC와 미국의 항공기
산업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또한 불법이라는 WTO의
판결이 내려졌다.

에어버스-보잉 간의 보조금 분쟁은 WTO의 권고이행보다는 양자협약을 통한 휴전협정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억 달러 이상의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¹⁵⁾. 유럽은 금번 WTO 판결에 대해 보잉사가 받은 부적절한 보조금 규모가 240억달러로 패널이 판단한 불법 보조금 53억달러는 제고되어야 한다며 판결 하루만인 4월 1일에 다시 항소하였다. 미국 또한 4월 28일에 교차상소를 제출했다. 따라서 당분간 양측이 항소를 통해 최종결말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7년간의 공방이 마침내 끝이 보이는 듯하다.

4)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분쟁사례 시사점

미국과 유럽과의 분쟁은 아직 진행중이라 향후 정책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국들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에어버스-보잉 간의 보조금 분쟁은 WTO의 권고이행¹⁶⁾보다는 양자협약을 통한 휴전협정에 가까운 형태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보잉사와 에어버스사는 서로가 서로의 핵심 고객이면서 공급자로서, 에어버스사의 신모델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황에서 보잉-에어버스 분쟁은 승소국과 패소국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이 모두 불법이라는 WTO의 최종결정이 난 상황에서도, 양국이 선불리 권고에 따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조치를 상대국에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공개적으로 에어버스사와 보잉사에 도전장을 내밀고 대형 민항 공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캐나다, 브라질 등도 꾸준히 관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EC는 정부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돌파구로 1992년 양자협약 과 같은 양자간 협약을 맺거나, 또한 전 세계 항공기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 및 일본, 한국 등을 견제하고 각국의 보조금 수준을 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항공기 다자조약을 맺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1992년 양자협약 이 결국 WTO 체제에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었듯이 새로운 양자협약 혹은 민간 항공기 다자조약 역시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결국 운용은 WTO 보조금 규범의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 협약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국의 민간항공기 지원에 대한 불만이 얼마든지 다른 보조금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본 사례 이상의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WTO 보조금 규범의 합치성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잉 소송에서 분쟁조정 패널이 약 27억달러에 상당하는 NASA 항공비행

15)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와 보잉의 성명 중 일부 인용. 여기서 미국 측이 계산한 보잉의 불법 보조금 판정액 27억달러에는 연방세 면세분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이 폐기됐기 때문에 FSC/ETI 면세분은 보조금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16) 여기서 WTO의 권고이행이라 함은 피제소국의 완전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든가 반대로 피제소국이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경우에 제소국이 분쟁기구로부터 부여받은 보복조치의 이행을 말한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특정성을 띤 불법 보조금이라고 판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미국의 총 불법보조금 규모인 약 53억 달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 WTO 보조금 규범과의 합치성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패널이 책정한 불공정 연구개발 보조금의 규모가 막대하였지만, 이것은 유럽이 미국 NASA와 국방부 및 연방정부가 보잉사에 지급하였다고 추정된 170억달러에는 훨씬 못 미쳤다는 사실이다. 불법연구개발 보조금으로 추정된 것 중의 일부만이 특정성을 띤 불법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은 WTO 규범이 허용하는 수준 내에서라면 항공기산업과 같은 국가전략사업에 필수적인 연구개발이 장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항공기 제작 외에도 각종 국제물류사업, 정보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전제되는 합법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의 WTO 보조금 규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다.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 WTO 보조금 규범과의 합치성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WTO 분쟁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개발을 단계별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연구로 나눌 때,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기초연구의 성과는 사회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는 상업적 연계성이 낮아 기업들의 연구개발지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개발연구비의 비중은 약 50%를 상회하며 그동안 큰 변동이 없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응용 및 개발 쪽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부투자 사업으로 성과가 좋을수록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데 이럴 경우 결국 실질적인 기술개발 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어 보조금규정 위반을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성과가 좋은 사업에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교육기술부는 기초연구에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개발연구에 집중한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지만, 기초연구인가 아니면 개발연구인가는 부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WTO 보조금 규범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별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함께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는 기술개발 및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보조금 등 예상치 못한 국제통상 분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던 연구개발 사업을 수정할 경우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피제소국이 WTO 권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재기구가 제소국에게 부여하는 보복조치 권한을 제소국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WTO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WTO 보조금 규범의 합치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추정된 연구개발 보조금 중 일부만이 특정성을 띤 불법 보조금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은 WTO 규범이 허용하는 수준 내에서는 국가 전략사업에 필수적인 연구개발이 장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진행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진행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와 브라질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해당사업 연례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정부 공무원들의 발언 등이 분쟁에 있어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KIP**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
안덕근,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2호, 2007, pp. 357~384.
OECD, “Measuring Innovation: A New Perspective,” 2010.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각 연도

Dejavu and Future Dejavu: 금융위기의 반복성과 시장지배구조에 관한 단상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hong@kipf.re.kr)

I. 서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자금 투입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금융불안이 다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기 더블 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현재는 그 불투명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원유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조짐까지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현재의 금융위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르지 모르지만, 공통된 기본 원인 중 하나는 금융의 비대화¹⁾라고 본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완화에 편승하여 급성장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금융산업을 국가 주도 산업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대공황 이후 지켜져 오던 수많은 금융 규제법이 폐지 내지는 완화된 결과, 단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였고,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익률 특히 단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위험관리의 소홀,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수익률 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등이 모두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재정건전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건전성 감독 강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2008년의 금융위기와 현재의 금융위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르지 모르지만, 공통된 기본 원인 중 하나는 금융의 비대화라고 본다.

1) 규제완화를 통하여 실물경제 대비 금융시장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감독 및 자율규제가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총체적 상황을 이 글에서는 '금융의 비대화'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개방경제와 세계화를 통하여 각국 금융시장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이 보다 쉽게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

규제 강화 등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대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금융위기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개방경제와 세계화를 통하여 각국 금융시장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이 보다 쉽게 다른 지역으로 전이(contagion)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부문의 비대화에 있다. 거대화된 금융자본은 스스로 수익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인다.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나, 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기관 간의 자리 이동에 의한 인적 교류도 철저한 감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업계의 욕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을 꾀할 것이며, 이러한 욕망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한, 복잡하게 커버된 수익창출모델은 언젠가 다시 위험의 적절한 관리 수준을 벗어난 자산가치의 버블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가 최근 Greider(1989)의 『사원의 비밀(Secrets of the Temple)』을 읽고 그 단상을 적은 글이다. Greider(1989)는 미국의 1970~80년대 통화정책과 그 영향에 대하여 자세한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특히 인적요소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록 검토를 통하여 꼼꼼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²⁾.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시변수의 변화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상의 에피소드(episode)를 통하여 당시 통화정책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경제학 이론과 동 이론을 적용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필자로 하여금 성찰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주었다.

비록 이 책의 내용이 오래 전에 발생한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긴축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전개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던 '시장'의 개념에 대하여 현재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 비대화 현상에 비추어 필자가 해석하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기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Greider는 각종 인터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등을 근거로 하여 5년에 걸쳐 700 쪽이 넘는 *Secrets of the Temple* 을 저술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은 신비주의에 싸여 있다고 할 만큼 통화정책운용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공표되지 않았고, 과거 연준이사회 의장들의 의회 증언, 발언 등은 모호하기로 유명한 데서 책 이름이 유래하였다.

II. 금융위기의 반복성과 금융시장: 과거로부터의 교훈

1. 거시경제학과 통화정책³⁾

가. 1970년대 미국 인플레이와 통화정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 전후 미국은 마샬플랜을 기반으로 유럽의 경제 부흥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944년에 성립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는 금 본위를 기초로 한 세계경제 운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하에서 1950년대에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전비지출 등 늘어난 재정지출로 인하여 인플레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금 1온스를 \$35에 고정시킨 금 본위 체제하에서 달러 가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금의 유출이 심화되었고,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금 본위제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급기야 달러의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973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그 이후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가 지속되면서 카터 행정부 말기에 볼커(Volcker)가 미국 연준이사회의장에 취임하게 된다⁴⁾.

1979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연준이사회의장에 임명된 볼커는 인플레이션의 진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맞아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된다. 그 때까지 미국 연준이사회는 Federal funds rate를 운용목표로 삼아 이자율 조정을 통화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화폐론자(monetarist), 특히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순전히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역설하고, 따라서 인플레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화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⁵⁾. 이러한 주장은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을 형성하고 있던 케인즈(Keynes) 이론과는 다른 것이었으며,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목표의 변환은 경제이론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연방은행 Fed는 통화량 M-1의 증가율을 조정하는 것을 제1차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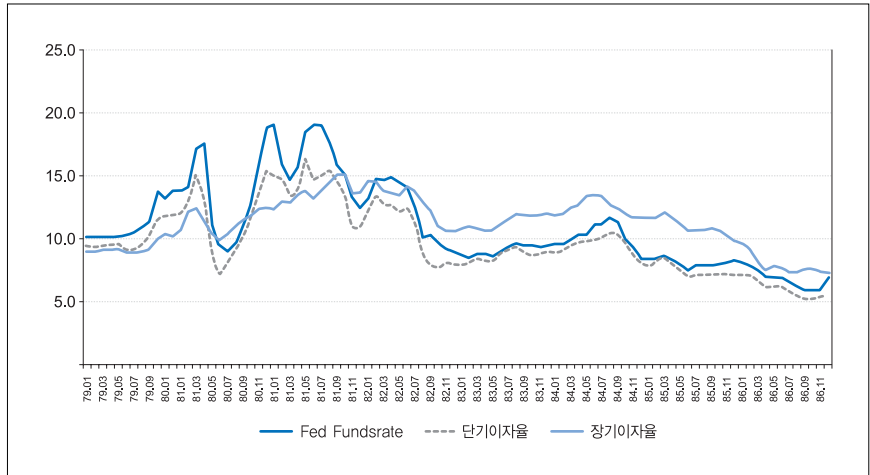
1979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연준이사회의장에 임명된 볼커는 인플레이션의 진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맞아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된다.

3) 이 절의 내용은 필자가 Greider (1989)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4) 볼커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기관 규제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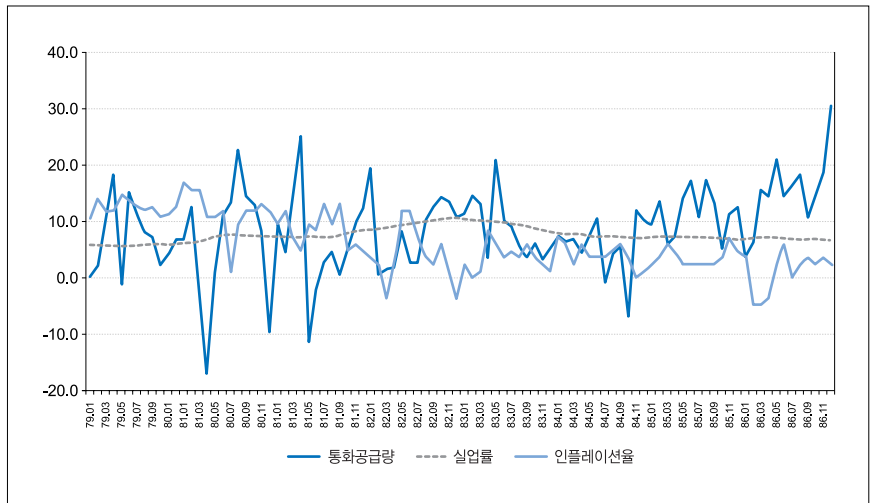
5) $MV=PY$ 로 대표되는 화폐방정식에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통화량을 경제성장에 맞게 일정규모로 증가시키면 물가 상승률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림 1] 미국 이자율 변동 추이(1979~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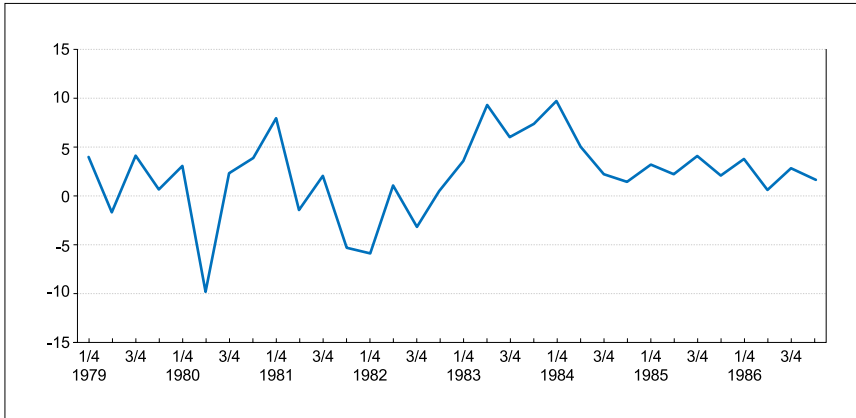
자료: Greider(1989), pp. 724~726의 통계를 그림으로 옮김

[그림 2] 미국 거시변수 변동 추이(1979~1986)



자료: Greider(1989), pp. 724~726의 통계를 그림으로 옮김

[그림 3] 미국 GNP 성장률 추이(1979~1986)



자료: Greider(1989), pp. 724~726의 통계를 그림으로 옮김

그러나 이러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용목표를 다시 이자율로 전환한 1982년에 이르기까지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지 않았으며 실업률은 점차 증가하는 등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불황도 심화되었다.

더욱이 1980년에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감세를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의 논리하에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하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했고, 장기간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고금리 상태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고금리정책은 결국 농업 분야를 비롯한 산업의 각 분야에서 도산사태와 실업률 증가를 가져와서 불황을 더욱 깊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축 통화정책이 고금리 현상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달러가치가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국내산업은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는 반면, 개도국들은 외채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⁶⁾. 이러한 결과는 1984년에 Continental Illinois와 같은 대형은행 외에 수많은 중소은행들의 도산을 초래하는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결국 Continental Illinois 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유화되는 수순을 밟았다⁷⁾. 결과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인플레이가 진정되었으나, 그것은 통화정책의 결과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른 대가

1980년에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감세를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논리하에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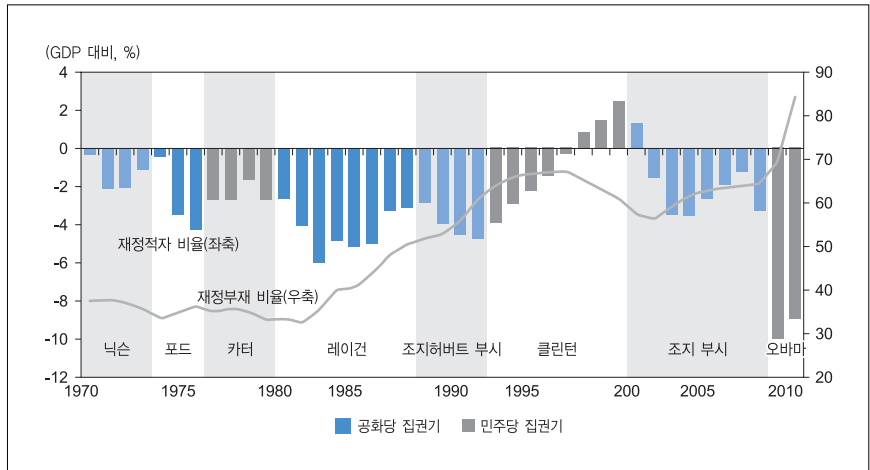
6) Greider(1989)는 1982년 멕시코의 외채위기를 상술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LDC)의 달러표시 외채는 미국의 국내통화정책에 의한 환율 변동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LDC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으로서 LDC의 위기는 LDC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규모를 키워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LDC 위기의 수습은 Volcker Fed의 또 다른 긴급과제였다.

7) 당시 예금기준 미국 7위였던 Continental Illinois 은행의 도산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이전까지 발생한 대형은행의 도산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이 에피소드가 흥미로운 것은 경제학 이론과 정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그야말로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였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⁸⁾.

[그림 4] 미국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2011), p. 3

- 8)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뉴딜 등의 정책효과라기보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덕분이라는 연구들도 있다.
- 9) 1951~1970년까지 20년간 연준이 사회 의장을 지낸 William McChesney Martin은 정책담당자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My gracious, here I am the new chairman of the Fed and I'm doing my best-I'm not the brightest fellow in the world but I'm working hard on this-and I haven't the faintest idea of how you control the money supply. Yet everyone thinks I have it at my fingertips." (Greider(1989) p. 329)
- 10) Friedman은 경제학 모형에 있어서 가정의 현실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예측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론모형에 의거한 그의 예측이 틀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Now I was wrong, absolutely wrong. And I have no good explanation as to why I was wrong." (Greider(1989), p.543)
- 11)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ose of us who have developed strong theories tries to fit the world into the theory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Greider(1989), p.543)

나. 통화정책의 black box

이 에피소드가 흥미로운 것은 경제학 이론과 정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그야말로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통화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무를 겸비한 연준이사회의 의장의 주도하에 인플레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인플레이는 진정되지 않고, 이자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에서는 불황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⁹⁾.

통화주의 경제학의 태두인 프리드만(Friedman)은 통화증가율에 근거하여 Fed의 통화정책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든가, 통화량 증가의 감소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1984년에 불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그의 예언은 모두 빗나갔다¹⁰⁾.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이었으며, 나중에 St. Louis 연방은행장을 역임한 통화론자 풀(William Poole)은 정책 실패에 대하여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였다¹¹⁾.

통화정책 운용목표의 변경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으며, 1982년에 결국 통화증가율을 일차적인 운용목표에서 제외하기까지 미국 경제

는 불황의 깊이를 더하였다. 통화증가율을 운용목표로 함에 따라 이자율의 등락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하였으나, 이자율의 등락과 통화증가율 간의 관계, 인플레이션율과 통화증가율과의 관계에서 예상했던 관계가 현실화 되지 않음으로써 의도했던 정책적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경제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9년부터 M-1을 운용목표에서 포기한 1982년까지 통화공급량은 극단적인 증가와 감축을 반복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은 1980년 여름에 잠시 급격히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통화공급량과 인플레이션 간의 안정적인 lead-lag 관계를 보이지도 않는다.

M-1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서 실패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화폐유통속도가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통화공급량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통화수요는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의 등락이 더 심해지면서 시장이 주는 정보의 혼선을 가중시킨다. 셋째, 당좌예금(checking account)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던 Regulation Q를 회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품¹²⁾을 만들면서 M-1에는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M-1과 마찬가지로 성격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정책운용목표의 정책효과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넷째, 통화정책의 시차(time lag)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lead-lag 관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다.

백악관과 재무부에서는 불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진정 시기를 늦추더라도 이자율을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볼커(Volcker)의 Fed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고금리를 유지하였다. 한편으로는 레이건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에 볼커의 입장에서는 정책선택의 여지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었다¹³⁾. 통화정책이 초래한 극심한 경제 불황이 개별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고통의 완화를 위하여 긴축을 완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진정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볼커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금융수익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Fed의 '유권자(constituent)'인 큰손¹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시장'이 인정할 때까지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밀고나가는 방법밖에는 인플레이션 진정의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본 것이다.

볼커는 1984년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연준이사회의 의장을 연임하게 되고, 1988년에 연준이사회의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을 정책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시적 경제주체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엄

경제학 이론을 정책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정책수단과 효과 사이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시적 경제주체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였다.

12) 이자를 지급하면서 수시입출금도 가능하게 한 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계정과 money market accoun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3) 최근 Sims(2008) 교수는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1970~80년대 초에 걸쳐 당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에 통하여 설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 이하에서는 SIFI(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겠다. SIFI는 말 그대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상업은행의 경우 자산 500억달러 이상, 비은행금융기관일 경우에는 Fed의 조언에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대형금융기관을 통칭한다.

청난 비용을 지불하였다.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도 경제학은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동일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¹⁵⁾. Greider(1989)는 당시 걸어서 드러나지 않은 통화정책상의 혼란을 밀도 있게 서술하였는데, 198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리더인 미국의 통화정책이 이러한 블랙박스(black box)적인 상황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후 이 자율을 직접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제이론에서 출발하여 정책변수가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전달과정(transmission mechanism)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경제학의 과제로 남아 있다¹⁶⁾.

2. 금융시장의 구조

가. 금융의 비대화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번지고 있는 “Occupy Wall Street” 움직임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로 집약될 수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태에 대한 반발이다¹⁷⁾.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¹⁸⁾ 사조에 의하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금융부문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1980년대 선진국의 금융 빅뱅(Big Bang)은 benchmark의 대상이었으며,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다.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가를 금융연관비율을 통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980년 이후 모든 나라에서 금융연관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모든 조사 국가에서 10배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비율로 금융부문이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금융연관비율 추이

	1980	1990	1997	1998	2000	2006
미국	4.91	6.22	8.12	8.61	8.97	9.90
영국	8.53 ¹⁾	8.95	10.87 ²⁾	-	14.25	17.19
일본	6.62	10.90	10.69	10.98	11.44	12.26
한국	2.98	4.13	5.71	6.34	6.24	8.18

주: 1) 1987년말 기준
2) 1995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2007)

15) Paul Krugman(2009)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New York Times에 장문의 기고문을 통하여 케인즈 이후 신자유주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단계에서 경제학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16) 경제정책은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경제통계자료와 분석결과를 보고 받은 연준이사회의 이사(Governor)들이, 이사회에 속성상 합의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간혹을 할 것인지 확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책결정자의 경제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7) 2008년 9월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며칠 후 미국 재무부는 AIG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선다. 구제금융 덕분에 유동성 위기를 넘긴 AIG는 기존 계약에 따라 사업파트너인 Goldman Sachs에 129억달러, Merrill Lynch에 68억달러, Bank of America에 52억달러, Citicorp에 23억달러 등을 지급한다. 그리고 2008년 연말에 AIG 임원들이 10억달러에 이르는 성과보너스를 지급받음에 따라 SIF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였다.(New York Times 2009/3/16)

18)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며,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치·경제적 사상으로 정의된다.

금융거래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감을 잡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의 순거래 규모는 하루에 약 4조달러에 이른다. <표 3>에서는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를 연간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 실물경제 대비 금융거래의 규모를 보여준다. 1년간 거래일수를 250일 정도로 잡아 연간 외환 거래 규모를 연간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세계 최대 외환 시장을 가진 영국의 경우는 무려 477배, 미국은 약 70배, 일본은 53배, 우리나라는 12배 정도이다. 금융투자 또는 투기를 위한 거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번지고 있는 “Occupy Wall Street” 움직임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로 집약될 수 있는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태에 대한 반발이다.

<표 2> 전 세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각 연도 4월 기준)¹⁾

(단위: 십억달러)

	1998	2001	2004	2007	2010
총 거래규모(A)	2,488	1,959	2,953	4,717	5,529
국내거래 이중계산분 ²⁾ (B)	-370	-245	-344	-436	-472
C=A-B	2,117	1,713	2,609	4,281	5,056
국제거래 이중계산분 ³⁾ (D)	-543	-446	-674	-957	-1,075
순거래규모(C-D)	1,527	1,239	1,934	3,324	3,981
국제거래 규모	777	677	1,185	2,051	2,586

주: 1) 현물, 선도, 스왑, 옵션 및 기타 외환상품 포함

2) 국내 달러 간 거래의 1/2

3) 해외 달러와의 거래의 1/2

자료: BIS(2010), p. 38

<표 3> 국가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¹⁾와 경상수지²⁾

(단위: 십억달러, %)

국가	영국	미국	일본	한국	기타 ³⁾	합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A)	1,854	904	312	44	1,942	5,056
	(37)	(18)	(6)	(1)	(38)	(100)
연간수출액 + 연간수입액(B)	972	3,246	1,462	892	-	-
환산 비율 ⁴⁾ (C)	476.9	69.6	53.4	12.3	-	-

주: 1) 2010년 4월 기준

2) 2010년 연간 수출금액과 수입금액 각각의 절대값의 합

3) BIS 자료에 수록된 54개국 중 나머지 50개 국가의 합

4) $C=A \times 250/B$

5) 괄호안의 숫자는 전세계 거래 대비 비중

6) 영국, 미국, 일본이 각각 1~3위임

자료: BIS(2010), p. 19에서 정리

금융의 비대화는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의 비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들 자본은 필연적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투자처를 찾게 되고,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는 이러한 금융자본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은 시장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금융상품과 혁신적인 기법의 창출을 촉진하는데, 금융감독은 이러한 추세에 선도적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힘들다. 투기적인 성격을 가진 헤지펀드를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 공매도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최대한의 금융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미 헤지펀드로 인하여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고, 유동성 위기, 나아가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금융의 비대화는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Fed, Treasury와 SIFI: Finance Club

1979년 개각에 의하여 연준이사회 의장이었던 밀러(William Miller)가 1년 이 안되어 재무장관으로 이동하면서, 카터 대통령은 새로운 연준이사회 의장을 모색하였다. 카터의 보좌관들은 수 명의 후보자를 검증한 결과, 볼커(Paul Volcker)가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동시에 그는 team player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임명하기를 망설였다¹⁹⁾. 그러나 당시 뉴욕연방은행장이었던 볼커에 대한 '시장'의 지지 때문에 결국 연준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된다.

볼커가 취임 초기부터 긴축통화정책을 통하여 이자율을 매우 높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에서는 파산과 실업증가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된다. 정치권과 행정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Fed의 긴축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볼커는 요지부동으로 긴축정책을 고수한다. 이 과정에서 볼커가 최우선 고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시장'의 반응이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요체는 이자율이며,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결국 금융계의 SIFT들이 통화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²⁰⁾. 따라서 SIFT들이 통화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여 장래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채권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이자율의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통화당국이면서 동시에 감독당국인 Fed와 시장참여자인 SIFI 간의 신뢰관계는 Fed의 지배구조와 오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Fed는 중앙은행으로서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권력의 집중과 견제라는 미국

19)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일찍부터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으나, 연준이사회 의장에 따라 행정부와의 정책협조의 정도가 달랐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행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더라도 행정부에게 협조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할 것을 주문한다.

20) 채권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수익률 감소를 우려하는 채권보유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가지게 된다.

의 정치논리에 따라 12개의 지역연방준비은행이 먼저 설립되었다. 이들 연방은행은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며 느슨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은행은 재할인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통일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연준이사회에 통화정책의 결정권이 집중되었다. 이들 각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6명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상업은행들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3명은 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지역연방준비은행의 주식은 동 지역의 상업은행들이 보유한다²¹⁾. 이들 9명의 이사들이 지역연방준비은행의 은행장을 선임한다. 상업은행들이 임명하는 6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은 은행가(professional bankers) 출신이고, 나머지 3명은 농업, 제조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유망인사(businesspeople) 가운데 임명한다. 연준이사회에서 임명하는 3명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임명한다²²⁾. 근래의 인사 관행은 상업은행 몫의 6명의 이사는 연방준비은행장이 추천하는 단독후보로 결정되며, 연방준비은행장은 이사들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준이사회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다.

Fed의 고위임원, 재무부의 고위직, 금융회사의 임원들 간에는 서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도 중요하다. 미국은 시장중심의 상업국가로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자유롭게 왕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재무장관들이 Wall Street 금융회사의 회장 출신이거나 또는 재무장관에서 물러나 금융회사의 회장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²³⁾. 최근 퇴임한 순으로 폴슨(Henry Paulson)은 Goldman Sachs 회장 출신, 스노우(John Snow)는 CSX 회장 출신, 오닐(Paul O'Neill)은 Alcoa 회장 출신, 루빈(Robert Rubin)은 Goldman Sachs 회장 출신이다. 루빈은 재무장관 퇴임 후 다시 금융계로 돌아가 Citicorp 회장을 역임하였다²⁴⁾.

연준이사회 의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볼커는 뉴욕연방은행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Chase Manhattan Bank와 재무부를 거쳐 뉴욕연방은행장이 되고, 연준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그는 의장 퇴임 이후, 뉴욕의 투자은행인 J. Rothschild & Wolfensohn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동 은행의 파트너인 울펜손(Wolfensohn)은 나중에 World Bank 총재가 된다. 볼커의 전임자인 밀러(G. William Miller(1978~1979))는 Textron 회장이었고, 임명된 지 1년이 안 되어 재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Fed의 고위임원,
재무부의 고위직,
금융회사의 임원들 간에는
서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도 중요하다.

21) 주주인 상업은행에 대한 배당은 6%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에 의한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주주인 상업은행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독특한 소유구조 때문에 1937년에 새로 지어진 연준이사회 건물에 대하여 Washington DC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수년간의 법률적인 논쟁을 거쳐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인정되어 재산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Greider (1989), pp. 49~50)

22)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William Butler 교수는 Fed의 이러한 지배구조 때문에 Wall Street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New York Times, 2009/4/27)

23) 물론 유착에 의한 부패방지, 이해상충 등을 고려한 윤리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24) 이하 각 인물들의 경력은 Wikipedia를 참고하였다.

1970년대 프리드만에서 비롯된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 이론이 등장한 이후,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시장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통화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연방은행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재무장관인 가이트너(Geithner)의 전임자인 코리건(E. Gerald Corrigan)은 퇴임 후 Goldman Sachs의 임원으로 갔고,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 출신인 맥도너우(William J. McDonough)는 퇴임 후 Merrill Lynch의 부회장으로 갔다. 현재 뉴욕연방은행장 더들리(William C. Dudley) 역시 Goldman Sachs 출신이다²⁵⁾. Fed의 특이한 지배구조, SIFI와 Fed 또는 재무부와의 상시적 인적 교류는 금융시장을 특별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다. 금융시장: 관념과 현실

1970년대 프리드만(Milton Friedman)에서 비롯된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 이론(monetary theory)이 등장한 이후, 신고전학과(neoclassical) 경제학에서 시장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²⁶⁾. 따라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기반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조가 자본주의하에서 작은 정부, 규제완화, 자율적 시장의 형태로 구현되었고, 최근 10~20년간 세계의 주요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영이 두드러졌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 독과점 시장 등에 대하여 배우지만, 이러한 개념은 거시 경제학에서 변두리에 머물렀으며, 대부분의 이론과 모델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주체의 합리성(rationality)을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결정은 효율적이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은 이러한 관념적인 시장과 다르며, 특히 금융시장은 소수의 SIFI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시장은 Goldman Sachs, JP Morgan Chase, Morgan Stanley, Citicorp, Bank of America 등의 대형금융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금융시장이 SIFI에 의하여 지배되는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하자. <표 4>는 각국별로 외환거래의 75% 이상을 점유하는 은행의 수를 나타낸다. 스위스는 2개 은행의 거래가 전체 은행거래의 75%를 넘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7개, 9개 은행이 전체 외환거래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표 5>와 <표 6>을 보면 각각 세계 채권, 주식 및 주식관련 발행 업무와 미국내 채권발행업무에 있어서 상위 10개 SIFI들의 시장 점유율을 볼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상위 10개 SIFI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미국 내에서의 집중도는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25) 이러한 인적 관계 때문에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But critics, including some current and former Federal Reserve officials, say the New York Fed is often more of a Wall Street mouthpiece than a cop." (New York Times, 2009/4/27)

26) 1980년 에 발간된 Milton Friedman의 Free to Choose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초창기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은행산업의 경우, 상위 5개 은행이 차지하는 시장집중도가 83%를 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상위 5개 보험사의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김형태 외(2007)는 은행과 생보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대비하여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장집중도는 주요국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⁷⁾.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상위 10개 SIFI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미국 내에서의 집중도는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외환거래의 75% 이상 점유하는 은행의 수

(단위: 개)

국 가	1998	2001	2004	2007	2010
스 위 스	7	6	5	3	2
덴 마 크	3	3	2	2	3
스 웨 덴	3	3	3	3	3
프 랑 스	7	6	6	4	4
캐 나 다	6	5	4	6	5
독 일	9	5	4	5	5
호 주	9	10	8	8	7
미 국	20	13	11	10	7
일 본	19	17	11	9	8
영 국	24	17	16	12	9
싱 가 포 르	23	18	11	11	10
홍 콩	26	14	11	12	14
한 국	21	14	12	12	16

주: 1. 현물, 선도, 스왑 거래 포함

자료: BIS(2010), p. 9

〈표 5〉 세계 채권, 주식, 주식관련 증권 발행시장 점유율 Top 10(2011년 상반기 실적)

(단위: 십억달러, %)

순위	투자은행	매출액	시장 점유율
1	JP Morgan Chase	242.6	7.2
2	Duetsche Bank	236.9	7.0
3	Barclays Capital	224.4	6.6
4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211.2	6.2
5	Citigroup	181.3	5.4
6	Goldman Sachs	178.8	5.3
7	Morgan Stanley	164.1	4.8
8	Credit Suisse	140.6	4.2
9	BNP Paribas	140.1	4.1
10	UBS	139.4	4.1
	Top 10 합계	1,859.4	54.9
	전체 합계	3,391.0	100.0

자료: Thomson Reuters

27) 김형태 외(2007), p. 29 참조

김형태 외(2007)는 은행과 생보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대비하여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장집중도는 주요국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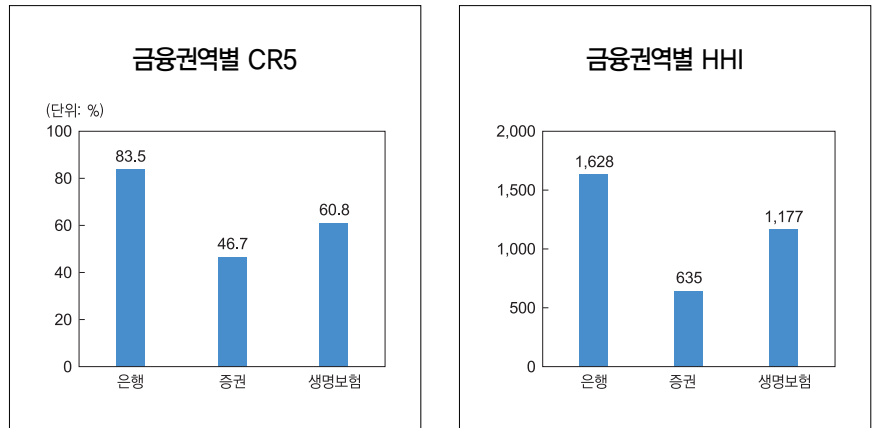
〈표 6〉 미국 채권시장 발행시장 점유율 Top 10(2011년 상반기 실적)

(단위: 십억달러, %)

순위	투자은행	매출액	시장 점유율
1	JP Morgan Chase	154.3	12.5
2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151.6	12.3
3	Barclays Capital	133.1	10.8
4	Citigroup	106.2	8.6
5	Goldman Sachs	91.7	7.5
6	Duetsche Bank	89.9	7.3
7	Morgan Stanley	86.5	7.0
8	Credit Suisse	62.3	5.1
9	UBS	58.7	4.8
10	RBS	54.5	4.4
	Top 10 합계	988.8	80.3
	전체 합계	1,231.9	100.0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5]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시장집중도



주: FY2009년 기준
자료: 신보성(2010), p. 9

금융거래는 신용거래 등을 감안할 때, 거래자 간의 신뢰가 특별히 중요하다. 따라서 거래자 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잘 안다는 것은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SIFI에 의하여 과점적으로 지배되

는 현실에서, 소수의 SIFI 간의 신뢰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독기관인 Fed의 지배구조 등과 맞물려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이 클럽(Club)적인 인적교류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과점적 형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시장에서도 과점형태의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SIFI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는 규제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결과가 어떤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하여 버블 붕괴로 이어져 SIFI의 도산위기로 발전된다면 그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III. 시사점

미국에서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연준이사회의 의장이 임명되거나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시장'의 반응(reaction of Wall Street)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을 말하는 것이며, '시장'의 반응이란 곧 이들 시장을 지배하는 SIFI들의 기대를 의미한다. '시장'은 '시장과 정부를 잘 이해하는(understands the government and market)'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²⁸⁾.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선회를 하게 된다. 1980년대에 미국, 영국 등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금융의 활동영역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입법된 법률들이 대부분 폐기되는데, 상업은행과 투자는행 간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투기손실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던 Glass-Steagall Act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었고, SIFI들은 이러한 규제완화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욕심을 부린 결과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다²⁹⁾.

이 글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시장의 실체에 대하여 되짚어보았다. 현행 미국의 금융제도는 뿌리깊은 제도가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과점적 형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28) Goldman Sachs CEO 출신인 전 재무장관 Henry Paulson은 현 재무장관 Timothy Geithne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한 바 있다. "A very unusually talented young man. He understands government and understands market." (TIME magazine, Sep 25, 2008)

29)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미국에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공황이후 가장 포괄적인 금융규제법안(Dodd-Frank Act)이 2010년에 입법화되었다.

금융시장에서의
무한한 수익 실현 욕구를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통하여 제어하는 것만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 1913년 연방준비은행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있어 JP Morgan과 같은 SIFI가 자금을 끌어모아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생기면서 대형금융기관들이 주주가 되었고, Fed의 주인(constituents)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산물이 미국의 Fed이고, 미국의 금융이 국제금융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장, 경쟁, 효율성 등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원칙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금융시장같이 과점시장이면서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의 효율성 제고란 SIFI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규제가 없을수록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생각은 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금융시장의 주인은 SIFI이고, 대마불사의 원리(Too big to fail)가 작동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신자유주의적 기조 속에서 지속되어온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이제 효용을 다하였다고 하겠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장에서의 무한한 수익 실현 욕구를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통하여 제어하는 것만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름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강화 움직임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제도 정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지역통화기구(regional financial structure)의 설립, 금융거래세의 도입과 같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소국 개방경제로서 국제금융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만큼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KIF

<참고문헌>

- 김형태 · 신보성 · 오승현, 『한국 금융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시아 금융시장 부상에 따른 한국의 대응』, 한국증권연구원, 2007. 5. 25.
- 신보성,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유망지역: 아시아」,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 2, No. 4, 자본시장연구원, 2010, pp. 6~22.
-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 계정의 이해」, 2007.
- _____, 「국제경제정보」, 제2011-32호, 2011. 7. 19.
-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Report on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Activity in 2010*, December, 2010.
- Greider, William, *Secrets of the Temple: How the Federal Reserve Runs the Country*, Simon & Schuster: New York, 1989.
- Krugman, Paul, “How did Economists Get It So Wrong?”, *New York Times*, Sep. 6, 2009.
- Sims, Christopher, “Stepping on a Rake: The Role of Fiscal Policy in the Inflation of the 1970’s,” Paper presented at the Bank of Japan seminar, Aug. 1, 2008.
- Thomson Reuters, “Debt Capital Markets Review,”
http://dmi.thomsonreuters.com/Content/Files/2Q2011_Global_Debt_Capital_%20Markets_Review.pdf
- Tumulty Karen and Massimo Calabresi, “Three men and a Bailout,” *TIME* magazine, Sep. 25, 2008.
- Walsh, Mary, “AIG Lists Banks It Paid with US Bailout Funds,” *New York Times*, Sep. 16, 2009.



공공정책포럼

■ 제22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속성장을 위한 인사 · 조직 혁신 (민간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22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지속성장을 위한 인사 · 조직 혁신(민간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 시 2011년 10월 19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F)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10월 19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F)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인사 · 조직 혁신(민간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2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국내의 전체 상황이 어수선하고 과거에 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월가 시위가 전 세계적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등 60억 여 인구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듯함. 또한 국내적으로도 문화 등 의식의 변화가 탁류처럼 흘러 새로운 새벽이 오는 전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오늘은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을 모시고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일으켜 세우고 부가가치를 만드는지, 인사 조직 매니지먼트에 대해 최근 첨단 기업들이 현장 중심으로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공기관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들어보고자 함.

주제발표 요약

지속성장을 위한 인사·조직 혁신

한수희/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

컨설팅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민간과 공공을 같이 경험했음. 이 둘의 트렌드를 보면서 공공부문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를 살펴보겠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과거 전경련의 30대 기업이 투자한 민간 기업으로, 항상 처음의 것을 만들어 내라는 미션으로 '고객 만족도'와 인터스트리 키워드를 '존경받는 기업'으로 하고 있음.

스티브 잡스의 죽음이 산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혁신은 R&D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애플이 매킨토시를 출시했을 때 IBM은 R&D에 최소 100배 이상의 비용을 쏟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혁신은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느냐와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결과를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음. 잡스가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은 '창조(creativity)'와 '도전(challenge)'이라는 이슈를 던진 부분임. 오늘 주제인 전략과 HR 중에 어떻게 인적자원을 관리할 것인지와 어떤 전략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성과와 지속성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이슈가 될 수 있음.

몇 개의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변동성임. 민간사레가 공공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 봤는데, 민간의 경우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하고, CEO들이 수익이 없으면 바로 해고되는 상황임. 이런 부분과 공공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는 것이 이슈라고 볼 수 있음. 2008년 리먼 사태를 비롯해 유럽발 사태 등 민간기업은 초긴장 상태로 비상경영이라 할 수 있는 트렌드를 보여 주고 있음. 즉 과거에는 예측되는 조정경기였다면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래프팅 형태의 경영환경임.

두 번째는 경쟁인데, 삼성과 애플이 과격하게 경쟁을 하고 있음. 비록 후발주자라 삼성이 밀리는 듯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1년 만에 애플과 경쟁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에서 핵심역량과 핵심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조직 인사에서 이슈가 될 것임. 아이폰이 KT에서 처음 보급됐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음. 이에 삼성전자가 비상을 끌어 300명의 TF를 만들어 100일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갤럭시 S를 만들어 냈음. 이는 미래의 조직 인사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인력 특히 S급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고민임. 공공과 민간의 차이

가 여기서 나오는데, 공공은 순환인사가 정례화되어 있는 반면, 민간 특히 삼성은 부장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 않음. 그러므로 민간에서 말하는 S급 인재를 공공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임.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저 성과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임.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CSR)으로 공공에서 사회적 책임은 공공성 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은 생존을 위한 기업 이미지 관리전략임. 여기에서 이슈는 동반성장과 ISO 26000이라는 부분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상생경영이라는 미션 아래 5년 동안 1,600개 협력업체에 1조원의 무료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HR부문에서 경영환경이 변하면 사업전략이 변해야 하고, 전략에 따라 조직이 바뀌어야 함. 조직의 기능 자체가 양손잡이 조직이나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되는 것이 특성임. 최근에는 '사람전쟁'이 붙었음.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이자수입이 10억원 이상 되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최상의 PB전문가들을 최근 삼성이 연봉의 2배를 주면서 경쟁적으로 데리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함. 즉 이들을 관리하려면 성과보상시스템이 차별화되어야 하고, 이런 변동성에는 스피드와 유연성이 요구됨. 기업이미지 관리에는 기업가치와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함.

과거의 조직은 기능 조직과 필요에 따라 사업부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프로세스 조직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민간은 최근 복합형 조직으로 조직의 유연성 극대화에 주력하고, 상위조직 간의 경계는 유지하되 하위조직 간의 경계를 해체해 조직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 있음.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쪽(왼손)은 신사업 혁신 조직으로 만들고 나머지(오른손)는 기존사업 조직으로 두어, 구조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신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제공하고 기존사업은 기존 보유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M&A 전략인데 자체적 R&D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경우는 스피드가 떨어지므로 M&A를 통해 역량을 합쳐 성장시키자는 것임.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우리의 기업을 중국으로 유치해 산업을 키웠으나, 현재는 쌍용자동차와 같은 기업을 M&A해서 기술을 습득해 소화되면 팔아버리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음.

엘지전자에는 TDR 조직이라는 것이 있음. 기존의 사업조직과 달리 각 기능부서의 다양한 인력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TDR 조직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임. 한전에서 시도했으나 생각만큼 잘 되지는 못한 듯함.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론칭하는 개념으로 단일적 기준으로 분화하는 대신 변동성 또는 전략방향에 따라 분화기준을 혼합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장점유율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전략과 경영시스템 간의 총체적 정렬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 시장한계 극복을 위해 M&A, 다각화 등의 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조직시스템과의 정렬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엘지생활건강의 예를 들면 기존 화장품 사업에서 코카콜라, 해태음료 등 음료사업을 M&A하고, 최근에는 물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음료사업 다각화를 추진했음. 올해만 매출액 2조원을 넘기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 엘지생활건강의 조직구조를 보면 본사에서 지원분야(기획재경, 인사협력, 구매, 품질경영, 정도경영, 디자인센터)는 직접 관리·통제하고, 사업단위의 Healthy, Beautiful, Refreshing, 해외사업은 독자적 기능을 주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묶어 주고 있음. 독특한 기업문화로 6시 이후에 회사에 남아 있으면 임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기업문화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기업을 급성장시킨 경우임.

그리고 조직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한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바뀌면 기존의 전략을 뒤집어 엮는 경향이 있음. 조직의 연속성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 경영환경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되 중장기 조직구조는 전략과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속성을 내포하는 것이 필요함. 즉 조직모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단일형 조직분화에서 중기적으로는 혼합형 조직분화로, 장기적으로는 아메바 조직이라 불리는 사업단위를 쪼개서 독립형 조직으로 두어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조직으로 가야 함. 많은 회사들이 지주형 회사(holding company)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강성노조를 분산시키려는 목적, 그리고 부가가치가 약한 부분 즉 시설관리 등을 아웃소싱 주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인사도 아웃소싱해서 내부의 평가를 외부에서 하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음. 지속가능경영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웅진그룹을 들 수 있는데, 웅진은 출판으로 시작해 정수기 렌탈, 에너지·화학, 쿠션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윤리, 환경, 혁신, 창조라는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PMI(Post-Merger Integration)작업을 진행해 기업문화를 만들었음. 화학적 통합이 아닌 키워드로 전체 그룹의 문화를 통합하는 작업으로 웅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우스 내에서 빠르게 뭉칠 수 있었음.

핵심 인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요소 중 핵심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에는 20대 80의 법칙으로 외부의 영입 20과 80의 기존 인재를 키우는 전략임. 확보된 핵심 인재의 내부 육성 관점에서 유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임. 또한 내부 인재를 육성할 때 generalist와 specialist를 구분해서 트랙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공공기업의 경우는 트랙이 하나로만 되어 있음. 따라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트랙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임. S급 인재를 영입하려면 일단은 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함. 과거의 집단주의 평가에서 집단과 개인이 혼합되어야 하며 보상수준과 구조, 결정,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SK텔레콤의 사례를 보면 기본연봉에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직접 연계되는 개별 인센티브를 주는 2단계 구조를 도입했음. 즉 사업 특성에 맞는 보상 차별화를 활용하는 등 최적화된 보상 틀을 적용함.

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삶과 일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트렌드임. 일하기 좋은 기업(Great Work Place)은 비전 매력도, 인재관리 매력도, 기업 문화 매력도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Work Smart는 창조 여력을 성과 창출로 이어지게 해 조직 내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유도하는 경영활동으로, 1단계는 비부가가치 업무를 제거해 창조 여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2단계는 창조 여력이 자아실현과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임. 유한킴벌리는 개인자리를 없애고 출근해서 캐비닛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통해 공간효율이 50%나 개선되었다고 함.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파트타임 확대 등을 통해 성과를 챙기겠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음.

마지막으로 이들 이슈를 공공부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임. 공공기관이 과거에 비해 정체성이 모호해져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성장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임. 첫째가 성장전략 중심의 조직 확대 및 강화, 둘째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BWP(Balanced Work Place) 관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셋째는 중장기 관점의 연속성 확보에 집중, 넷째는 선제적인 혁신제도 도입 및 적용임. 전체적으로 기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사

람을 어떻게 할 거고 재무적인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가 필요함. 양손잡이, 하이브리드 조직 활성화가 필요하고 워크 하드가 아닌 워크 스마트가 절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정부가 세종시로 가고 공공기관의 본사가 혁신도시로 흩어지게 되면 지금의 구조로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 보임. 존경받는 공공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자유 토론

김한곤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민간기업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은 공공부문과는 차이가 많음. 경영평가가 족쇄가 되어 혁신을 하고 싶어도 평가의 규정 때문에 제약이 많음.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희 / 발표자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혁신평가와 경영평가를 합쳤더니 혁신 프로그램이 없어진 경향이 있었음. 공공기관 변화를 위해서는 평가에 대해 환경의 변화나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함. 경영평가의 구조 자체가 경영효율성 중심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도 혁신 활동을 하는 기관이 평가가 잘 나오고 있음. 혁신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 온 수자원공사의 경우,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템들을 경영평가에 맞추어 잘 정렬해서 내용면에서 우위가 있음.

오재인 / 단국대 경영학부

삼성의 계열사에서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요청을 해서 다녀왔는데 공공기관의 평가시스템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고 했음. 이는 공공부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함. 민간의 평가는 수치 위주로 단순하지만 공공부문 평가는 비계량 부문도 많고 프로세스가 단순하지 않음.

공공기관에 따라 성격이 달라서 CEO의 역량도 점

근도 다를 수밖에 없음. 공기업 유형별로 CEO 운신의 폭이 큰 기관과 작은 기관에 대해 연구한 적은 없는지 알고 싶음.

한수희/발표자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봤고, CEO들을 보면 공기업 출신, 민간기업 출신, 정부에서 오신 분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기업의 CEO는 공공 전문가이면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함.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첫 해에는 의욕을 보여도 국정감사, 경영평가를 한 번 받고 나면 민간과 차이가 있고 재량을 발휘할 부분이 없음에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음. 그런 부분에 대응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유형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들에 따른 것 같음. CEO들을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공공부문 전문가이면서 경영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계속 키워야 하고, 그들이 공공부문을 개선한다면 조직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함.

송대희/좌장

마지막에 국정감사, 경영평가를 한 번 받고 나면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절감한다고 한 부분이 핵심을 지적한 것 같음.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도 도전과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음.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

해서는 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양손잡이 조직이나 하이브리드 조직 같이 어떤 변화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었음. 올해도 다음 달과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달에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모시고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12월에는 2주년을 맞이하는 공공포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즉 부기관장들이 네트워크 마련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포럼의 생태계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1-21

요약

- 그리스 정부는 조세수입 확충을 위한 세제조치가 포함된 긴축정책을 2011년 9월 21일에 발표함
 - 세제조치는 연대세 부과, 재산세의 한시적 부과, 소득세 면세점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9월 8일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해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11년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을 승인함
- 캐나다 재무부는 10월 4일 2011년 예산안을 기초로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안(Keeping Canada's Economy and Jobs Growing Act)을 발표함
 -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지역사회 지원, 가계 지원,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투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그리스 긴축정책 발표

- 그리스 정부는 조세수입 확충을 위한 세제조치가 포함된 긴축정책을 2011년 9월 21일에 발표함
 - 이번 긴축정책은 그리스가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며 이행하기로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
 -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약 143.2억유로 삭감하고, 140.9억유로에 달하는 조세수입을 확충할 계획임
- 세제조치는 연대세(solidarity levy) 부과, 재산세(property tax)의 한시적 부과, 소득세 면세점 인하,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가구 소득에 1~5%의 연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연 가구 소득 12,000~20,000유로: 1% 적용
 - 연 가구 소득 20,000~50,000유로: 2% 적용
 - 연 가구 소득 50,000~100,000유로: 3% 적용
 - 연 가구 소득 100,000유로 초과: 4% 적용
 - 입법자(lawmakers) 및 공직자(public office holders): 5% 적용
 - 연대세 부과를 통해 약 13.8억유로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2011~2013 과세연도에 한해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임
 - 1m²당 평균 4유로의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약 20억유로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단, 실업자 또는 연소득이 12,000유로 미만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됨
 - 2011 과세연도부터 소득세의 면세점이 12,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인하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될 예정임
 - 표준세율: 19%에서 23%로 인상
 - 경감세율: 11%에서 13%로 인상
 - 초경감세율: 5.5%에서 6.5%로 인상
 - 요식업 및 주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13%에서 23%로 인상
 - 요트, 수영장,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luxury levy)가 부과될 예정임
- 건축정책에는 세제조치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임금 삭감 및 연금지급액 삭감 계획이 포함됨
 - 그리스 정부기관 공무원 중 30,000여명에 대해 2011년 12월 말까지 임금의 60%만 지급
 - 월 연금 지급액이 1,2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
 - 55세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월 연금 지급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의 40%를 삭감

2. 프랑스의 2011년 추가경정예산 승인

- 프랑스 의회는 2011년 9월 8일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 개정이 중심인 2011년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을 승인함

가. 법인세 관련

-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한도규정을 도입함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과세소득 1백만유로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1백만유로로 하고, 과세소득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 연결자회사의 경우, 연결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이월결손금 한도를 계산함
 - 한도를 초과한 이월결손금은 이월되며, 이월되는 기간에 제한은 없음
 - 개정 전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없음
 - 이 규정은 추경예산이 효력을 얻은 날(즉, 관보(official gazette)에 기재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시행됨
- 내국법인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전세계소득통합방식(worldwide consolidated income basis system)을 폐지함
 - 전세계소득통합방식에 따르면, 프랑스 내국법인은 프랑스와 외국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나 외국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전세계소득통합방식은 2011년 9월 6일 이후부터 폐지됨
-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를 과세소득에 가산함
 - 개정 전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5%만 과세소득에 가산함

- 프랑스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분참여소득공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도 적용하고 있음(Art. 219 I-a quinquies CGI)
- 지분참여소득공제제도: 이미 과세된 유보금을 원천으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개정된 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나. 소득세 관련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제도의 혜택을 축소시킴
 - 기존에는 6년 이상 보유시 매년 10%씩 공제율을 상향시켜 15년 이후에는 100% 공제를 허용하였지만,
 - 개정 후에는 6~15년까지 매년 2%씩, 16~24년까지 매년 4%씩, 24년 이후 매년 8%씩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30년 이후에 100% 공제가 가능토록 함
 - 개정된 공제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표 1〉 장기보유공제 제도 개정내역

보유기간	장기보유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0~ 5년	없음	없음
6~15년	(보유연수-5)×10%	(보유연수-5)×2%
16~17년	100%	20%+(보유연수-15)×2%
18~24년	100%	24%+(보유연수-17)×4%
25~30년	100%	52%+(보유연수-24)×8%

- 해외에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가 주로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그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이전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프랑스에서 공증서(notarized deed)를 작성하여야 함
 - 이 규정의 목적은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등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다. 기타

-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하여 호텔 숙박세를 도입함
 - 과세대상 숙박시설은 5.5%의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시설임
 - 호텔 숙박세는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료의 2%를 징수함
 - 호텔 숙박세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3. 캐나다 재무부의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10월 4일에 2011년 예산안¹⁾을 기초로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Keeping Canada's Economy and Jobs Growing Act)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지역사회 지원, 가계 지원,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투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2011년 3월 22일 캐나다 재무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내각불신임 결정에 따라 캐나다 의회는 해산되었음. 이후 5월 2일 총선을 실시한 결과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고, 6월 6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상정함 이는 기존 예산안과 비교해 일부 지출부문에 수정사항은 있었으나 세법 부문은 기존 예산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이번 발표한 법안은 6월 6일 발표한 예산안의 세법개정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음. 예산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세동향 11-07/2011, 04 참조하기 바람



- 캐나다는 2009년 이후 6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정도로 현재 주요 7개국(G-7) 중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향후 2년간 G-7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성장세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임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임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세간소화 방안 등을 제시함
 - 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임시 고용증대 세액공제(a temporary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를 신설함
 - 소기업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가 전기 대비 증가한 경우 그 차이금액을 CAD 1,000까지 공제함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청정에너지의 발생(generation)과 보존(conservation)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함
 - 투자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적격 환경 투자신탁(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광물탐사 세액공제(the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를 1년간 연장함
 - 개정안에 따라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도관 주식 투자에 투자한 자(flow-through share investor)는 광물탐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2012년 1월 1일부터 무역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법 간소화를 추진함
 - 관세율이 동일한 항목을 통합하고 최종소비에 대한 특례규정²⁾(end-use provisions)을 삭제하여 관세 부과 절차를 간소화함
 -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저가의 비영리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절차를 간소화함
- 제조 및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및 가공기계(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chinery)에 대한 가속상각 규정을 2년 연장함
- 지역사회(communities) 지원방안으로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를 신설함
 - 해당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가 연간 200시간 이상 소방활동에 봉사한 경우 연간 CAD 3,000의 15% 상당의 환급불가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 혜택을 부여함
 - 적격 기부금 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기부금을 이용한 탈세를 줄이기 위해 통합 패키지를 소개하고 납세자가 법정 기부금 단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가계(families) 지원방안으로 가족 돌봄 세액공제와 어린이 예방활동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가족부양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함
 - 가족 돌봄 세액공제(the Family Caregiver Tax Credit)를 신설함
 -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자에게 연간 CAD 2,000의 15% 상당의 환급불

2) 관세분류표에 따라 수입관세를 결정된 후 수입 재화가 캐나다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등의 일정 요건 하에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되는 규정임

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the Children's Arts Tax Credit)를 도입함
 - 어린이의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개발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어린이 1명당 CAD 500 까지 공제하는 방안임
- 가족부양자의 의료비 세액공제(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에 대한 한도를 폐지함
 - 부양자(dependent relative)의 의료비 지출액 중 CAD 10,000까지 공제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방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the Tuition Tax Credit)와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s)의 범위를 확대함
 - 직업, 무역과 전문가자격증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대학에 등록한 자의 교육기간을 현행 13주에서 3주로 개정함으로써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동향 11-22

요약

- 독일-스위스 및 영국-스위스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undeclared account)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협약(tax agreement)을 체결함
 -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은 2011년 9월 21일에, 영국-스위스 간 조세협약은 2011년 10월 6일에 각각 서명되었으며, 두 조세협약은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국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유산세 및 증여세, 연금보험에 관한 각종 비과세·감면 및 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하였음
 - 이번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1. 독일-스위스 및 영국-스위스의 역외탈세 방지 조세협약 체결

- 독일-스위스 및 영국-스위스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undeclared account)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협약(tax agreement)을 체결함
 -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은 2011년 9월 21일에, 영국-스위스 간 조세협약은 2011년 10월 6일에 각각 서명되었으며, 두 조세협약 모두 각국 의회의 승인



을 받아 201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조세협약의 체결은 스위스 무기명 계좌를 통한 독일 및 영국 탈세혐의자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둘러 싸고 국가간에 지속되어 온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임
 - 독일, 영국 및 스위스 정부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를 통한 역외탈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조세협약의 체결을 추진한 반면,
 - 스위스 은행과 무기명 계좌 보유 고객들은 고객정보 보호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조세협약 체결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음

가.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

- 독일-스위스 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르면 2013년 초부터 독일 거주자가 스위스 은행에 보유하는 무기명 계좌 소득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26.3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독일에 지급해야 함
 - 26.375%는 독일 내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한 세율임
 - 원천징수세율은 향후 독일 내 세율변동에 연동하여 변경될 계획임
 - 현재 독일 거주자가 보유한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 소득은 CHF 2,000억(약 USD 2,220억) 가량으로 예상됨
- 독일 거주자가 스위스 무기명 계좌 소득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하거나 자산에 19~34%의 세율을 소급 적용해 산정된 세금을 일괄납부(lump-sum payment)해야 함
 - 일괄납부시 적용세율은 계좌 보유기간, 최초 및 최종 계좌 잔액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스위스 은행들은 일괄납부에 따른 세액에 해당하는 CHF 20억(약 USD 22.2억)을 독일에 선지급할 계획임

- 조세협약에 포함된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은행계좌 재무자료를 스위스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조세협약 체결 전에는 독일 정부가 거주자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알아야만 자료 요청이 가능했으나, 조세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료 요청 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만으로도 재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조세협약이 시행되는 최초 2년간은 자료요청 가능횟수가 연 750~999회로 제한됨
 - 이후 매 2년간 자료요청 가능횟수를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임

나. 영국-스위스 간 조세협정

- 영국-스위스 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르면 2013년 초부터 영국 거주자가 스위스 은행에 보유하는 무기명 계좌 소득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27~4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영국에 지급해야 함
 - 자본이득에는 27%, 배당소득에는 40%, 이자 및 기타 소득에는 48%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원천징수세율은 향후 영국 내 세율변동에 연동하여 변경될 계획임
 - 영국 거주자 중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UK domiciled individual 또는 non-dom)'가 스위스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는 선택에 의해 영국 내로 송

- 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remittance basis taxation)될 수 있음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가 영국 내로 송금되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위해서는 스위스 금융 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증명서(certification)를 제출해야 함
- 스위스 금융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dom)로 보지 않아, 자본이득에 28%, 배당소득에 42.5%, 이자 및 기타 소득에 5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영국은 조세협약 체결로 약 £30~60억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독일-스위스 조세협약과 같이 영국 거주자가 스위스 무기명 계좌 소득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자진신고하거나 자산에 19~34%의 세율을 소급 적용해 산정된 세금을 일괄납부해야 함
- 스위스 은행들은 일괄납부에 따른 세액에 해당하는 CHF 5억(약 USD 5.55억)을 영국에 선지급할 계획임
- 자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 과세당국에 영국 거주자의 신상정보 및 계좌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함
- 영국 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영국의 납세번호(tax reference number)
- 스위스 은행명 및 주소
- 계좌 고객번호
- 연간 계좌 잔액 및 12월 31일 시점의 자산명세서(statement of assets)
- 조세협약에 포함된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영국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은행계좌 재무자료를

스위스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독일-스위스 간 조세협약과 동일하게 영국도 자료 요청 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만으로 스위스에 재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자료요청 가능횟수는 연 500회로 제한됨

- 이 외에도 스위스는 조세협약 실행 이후 스위스 무기명 계좌의 자금이 이동한 관할구역(jurisdiction)에 대한 정보를 영국에 제공할 예정임
- 스위스 정부는 조세협약이 실행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영국 거주자의 스위스 무기명 계좌 자금이 가장 많이 이동한 10개 관할구역 정보를 수집하여 영국에 제공할 예정임

2. 미국 2012년 물가인상 조정 내역 발표

- 미국 국세청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한도 등의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유산세 및 증여세, 연금보험에 관한 각종 비과세·감면 및 납부금액을 조정하여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하였음
- 이번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개인소득세 부문에 있어서 인적공제(the personal exemption), 표준공제액(the standard deduction amounts) 등을 인상함
- 2012년 적용될 1인당 인적공제액은 \$3,800로 전기 대비 \$100 인상됨
- 10년 전인 2001년 1인당 인적공제액은 \$2,900이었으며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50~\$100씩 인상하거나 전기 금액을 유지하면서 11년간 \$900의



금액이 인상되었음

-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은 신고지위별로 \$150에서 \$300까지 인상됨
 - 2012년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표준공제: \$11,900 (전기 대비 \$300 인상됨)
 - 2012년 단일신고의 경우 표준공제: \$5,950(전기 대비 \$150 인상됨)
 - 2012년 세대주의 경우 표준공제: \$8,700(전기 대비 \$200 인상됨)
-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2011년 \$69,000에서 2012년 \$70,700로 \$1,700의 금액이 인상됨
- 장기 국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천소소득에 대한 공제액(foreign earned income deduction)은 2012년 \$95,100로 전기보다 \$2,200 인상된 금액임
-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s: MSAs)에 불입한 금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를 인상함
 - 본인 보상보험(self-only coverage)의 경우
 - ☞ 최소연간공제액(minimum annual deductible): \$2,100
 - ☞ 최대연간공제액(maximum annual deductible): \$3,150
 - ☞ 최대연간 본인부담금(maximum annual out-of-pocket expenses): \$4,200
 - 가족 보상보험(family coverage)의 경우
 - ☞ 최소연간공제액(minimum annual deductible): \$4,200
 - ☞ 최대연간공제액(maximum annual deductible): \$6,300
 - ☞ 최대연간 본인부담금(maximum annual out-of-

pocket expenses): \$7,650

- 유산세(estate tax)의 통합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하여 유산세와 관련된 한도금액을 인상함
 - 2012년 유산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한도는 \$5,120,000로 전기 대비 \$120,000의 금액이 인상됨
 - 한편 2012년 증여세의 연간공제액(annual exclusion for gifts)은 \$13,000로 전기와 동일하게 유지됨
 - 유산세에 있어서 특정재산(qualified real property)의 특별평가방법(the special use valuation method)에 따라 감소하는 과세표준 금액의 한도가 전기보다 \$20,000 인상된 \$1,040,000로 결정됨
- 적격 주차비용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2012년 \$240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전기보다 \$10 인상된 금액임
 - 본 제도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한 적격주차비용을 매월 \$240를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임
- 연금에 있어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 2012년 각종 연금과 관련한 한도 금액이 인상됨
 - 개인은퇴계좌(Roth IRA) 불입가능 금액이 부부합산의 경우 \$173,000로 전기보다 \$4,000 인상되었고, 단일 및 세대주의 경우 \$110,000로 전기보다 \$3,000 인상됨
 -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 불입액에 대한 공제액이 부부합산의 경우 \$92,000로 전기보다 \$2,000 인상되었고, 단일 및 세대주의 경우 \$58,000로 전기보다 \$2,000이 인상됨

- 확정기여형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의 연간 납입한도가 2011년 \$49,000에서 2012년 \$50,000로 결정되어 전기 대비 \$1,000이 인상됨



| 정책 흐름 |

-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Fitch,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 2011년 8월(누적)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
- 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
-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본 자료는 2011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기획재정부는 '11. 11일(금)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며, 공기업(27개)·준정부기관(82개)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176개)은 준용할 수 있음

② '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초과현원 해소, 유류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③ '12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은 적정 수준을 반영

• 총인건비는 '12년도 물가상승률,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 이내 인상(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0.9%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②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조치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고

•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

-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 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마련시 직원들이 받고 있던 고정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가져온 금액

** 경영평가 성과급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이외에 내부평가 상여금, 생산장려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기관 내부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

성과급 지급률 개선(안)

(단위: %)

	중전 경영평가 성과급	개선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공기업	월 기본급의 250~500	월 기본급의 0~250	월 기본급의 250
중전 투자기관	월 기본급의 200~500	월 기본급의 0~300	월 기본급의 20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100~200	기준월봉의 0~100	기준월봉의 100

- 자체성과급은 엄정한 내부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지향적 보수체계 강화
 - 기존인건비 전환금이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기본급 등의 일률적인 임금상승 부작용이 없도록 '자체성과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고,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특히, 경영실적이 부진(D등급 이하)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④ 이번에 확정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 각 공공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
 -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

참고 신·구 대비 주요 내용

분야	2011년도 지침 주요내용	2012년도 지침 주요내용
① 총인건비 인상률	• 4.1% 인상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	• 3.0% 인상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0.9% 별도)
② 수당 등	• (신설)	• 경영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체성과급으로 활용하되, 자체성과급(인건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
	• 경영성과급 예비비 편성 한도	• 경영성과급 예비비 편성 한도
	예비비 편성 한도	예비비 편성 한도
	공기업 월 기본급의 500%	공기업 월 기본급의 250%
	중전 투자기관 월 기본급의 500%	중전 투자기관 월 기본급의 30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20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100%
③ 경상경비	• 전년 대비 동결	• 전년 대비 2% 인상
④ 업추비	• 전년 대비 동결	• (좌동)
⑤ 복리후생	•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 (좌동)
	•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폐지	• (좌동)
	• 예산을 통한 과도한 의료비 지원 폐지	• (좌동)
	• 퇴직예정자, 장기근속자 등에게 과도한 기념품 금지 등	• (좌동)
⑥ 사내근로 복지기금	• 정부 재정지원, 자산 매각 등 자체노력이 아닌 이익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 (좌동)
⑦ 사업비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수행	• (좌동)
	• (신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Fitch,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 본 자료는 2011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에서 발표한 「Fitch,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Fitch의 국가등급 전망 상향조정

- **(조정결과)** Fitch는 2011년 11월 7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등급: A+ 유지)

* 한국 등급(Fitch): ('08. 11. 10일)A+(부정적), ('09. 9. 2일)A+(안정적), ('11. 11. 7일)A+(긍정적)

* '긍정적' 등급 전망은 통상 1년 정도 후에 등급 상향조정으로 이어지는 경향

- **(조정사유)** Fitch는 ①재정건전성, ②대외건전성, ③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등을 등급 전망 상향사유로 제시

- **(재정건전성)** 상향조정의 중요사유(key rating strength)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경우 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대외건전성)** 충분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 은행 등의 단기외채 비중 축소,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한 유동성 확충 등 대외부문의 위기대응 능력이 대폭 개선

* Fitch는 선물환포지션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선제적 규제방안도 높게 평가

- **(경제 회복력)** 한국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

나, 수출기업의 높은 경쟁력과 탄력적인 환율제도가 취약성을 크게 완화

* '08년 위기시 한국은 짧은 경기하강('08. 4분기~'09. 2분기)을 거쳐 빠르게 회복

- **(북한 문제)** 전쟁, 체제붕괴 등 대북 위협요인의 발생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Fitch는 ①가계부채 문제, ②가변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높은 대외의존도, ③'12년 외채 만기도래액이 크다는 점 등을 제시

- 다만,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잘 대처해 나갈 경우 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언급

2 Fitch의 등급 전망 상향조정의 의미

◇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우리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

- 1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등급 전망이 상향조정되면서 우리 대외신인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시기인 '08. 11월 Fitch가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된 것과는 대조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되는 추세에서 우리 등급 전망이 상향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님

- 최근 신평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추세를 보임

2011년 신용등급이 조정된 주요 국가

	구분	S&P	Fitch	Moody's
하향	미국	AAA → AA+(부정적) ('11. 8. 5일)	-	Aaa → Aaa(부정적) ('11. 8. 2일)
	일본	AA → AA-(부정적) ('11. 1. 27일)	AA → AA(부정적) ('11. 5. 27일)	Aa2 → Aa3(안정적) ('11. 8. 24일)
	이탈리아	A+ → A(부정적) ('11. 9. 19일)	AA- → A+(부정적) ('11. 10. 7일)	Aa2 → A2(부정적) ('11. 10. 4일)
	스페인	AA → AA-(부정적) ('11. 10. 13일)	AA+ → AA-(부정적) ('11. 10. 7일)	Aa2 → A1(부정적) ('11. 10. 18일)
상향	브라질	-	BBB- → BBB(긍정적) ('11.4.4일)	Baa3 → Baa2(긍정적) ('11. 6. 20일)

자료: 국제금융센터

- 특히, '11년 경우 A등급 이상 국가들에 대한 신평사들의 상향조정 실적이 매우 드물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

- Fitch의 경우, '11년 A등급 이상 국가들에 대한 상향조정은 2차례에 불과

* 상향 (칠레) A → A+, 안정적, '11. 2월

(에스토니아) A → A+, 안정적, '11. 7월)

* 하향 (벨기에) AA → AA, 부정적, '11. 5월,

(이탈리아) AA- → A+, 부정적, '11. 10월

(포르투갈) A- → BBB-, 부정적, '11. 4월,

(스페인) AA+ → AA-, 부정적, '11. 10월

(슬로베니아) AA → AA-, 부정적, '11. 9월

(뉴질랜드) AA+ → AA, '11. 9월

(바레인) A → BBB, 부정적, '11. 8월

- Moody's의 경우에는 '11년 A등급 이상 국가들에 대한 상향조정이 한 건도 없으며, S&P도 4건에 불과

③ '긍정적' 등급 전망이 통상 1년 정도 후 신용등급 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AA' 레벨로의 진입을 기대

* A'레벨: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AA' 레벨: 신용도 높음('AAA' 레벨: 신용도 매우 높음)

** 외환위기 당시인 '97. 11. 18일 Fitch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된 이후, 한국은 'AA' 레벨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신용평가사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구분	S&P	Fitch	Moody's
외환위기에 전	AA-('97. 10월)	AA-('97. 11월)	A1('97. 10월)
현재 등급	A('05. 7월) (6번째 등급)	A+(긍정적, '11. 11월) (5번째 등급)	A1('10. 4월) (5번째 등급)

- 또한, Fitch의 등급 전망 상향조정은 S&P 등 다른 신평사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④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등급 및 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대외 신인도 제고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은행·기업들의 부담완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아울러,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여 주식·채권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참고 1 Fitch사 발표 원문

Fitch Revises Korea's Outlook to Positive

Fitch Ratings-Hong Kong -7 November 2011:
Fitch Ratings has affirmed Korea's Long-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 (IDR) at "A+", and revised the Outlook to Positive from Stable. The Long-Term Local-Currency IDR is affirmed at "AA" with Stable Outlook. The agency has also affirmed the Country Ceiling at "AA" and Short-Term Foreign-Currency IDR at "F1".

"Sovereign creditworthiness is strengthening as the sovereign and external balance sheets grow more resilient," said Andrew Colquhoun, Head of Asia-Pacific Sovereigns at Fitch. "However, a heavy external debt refinancing burden in 2012 and the volatil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pose risks for the export-oriented economy. Successfully navigating these challenges over 2012 would support the case for an upgrade."

Rising foreign reserves and decreasing reliance on short-term external debt are strengthening Korea's external liquidity. Foreign reserves are up 6.7% year-to-date to USD311bn. The external liquidity ratio (liquid foreign assets over external debt maturities) is projected at 178% for 2011 from 161% in 2008. The banking system's reliance on short-term external debt has falle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lative to total bank liabilities, GDP and foreign reserves.

Additionally, Korea has buttressed its liquidity

with an FX swap facility with the Bank of Japan worth USD70bn. The sovereign has other bilateral swap arrangements including a USD56bn facility in non-convertible yuan with the People's Bank of China.

However, Fitch estimates the external maturities will pick up strongly in 2012 to about USD66bn, against an average USD22bn annually over 2007-2011. This partly reflects heavy borrowing by Korean banks and corporate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eign holdings of Korean sovereign debt (including Bank of Korea instruments) contribute USD22bn. Refinancing these maturities without putting pressure on the external finances and foreign reserves would strengthen the case for an upgrade.

Moderate public debt and long-standing fiscal prudence are key rating strengths for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returned to surplus in 2010 (+1.4%) after running a modest 1.7% deficit in 2009. Korea's debt/GDP ratio is projected to drop below the "A" range median over the forecast period, pointing to strengthening sovereign creditworthiness. Sustained fiscal discipline would add to upward pressure on the ratings.

Household balance sheets look relatively stretched with debt at 132% of net disposable income at end-2010, similar to ratios i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or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a strong labour market and low interest rates support debt affordability and hence banks' asset quality.

Korea's export-oriented economy exposes household finances and bank asset quality to risks in the global economy, although Korea's flexible exchange rate and the strong productivity performance of Korean industry offer important buffers.

Korea's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has become more deeply entrenched sinc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1988. However, geopolitical risk associated with North Korea weighs on the ratings. Fitch views full-scale war or sudden Northern regime collapse (imposing relief and reconstruction costs on the South) as high-impact, but very low-probability risks. Proposals for a reunification fund of USD50bn (about 4% of 2011 GDP), financed from voluntary private contributions, would go some way to manage the contingent liability posed by the North.

The Local-Currency IDR remains on Stable Outlook reflecting Fitch's view that the rating remains unlikely to be upgraded from "AA" even in the event of a Foreign-Currency IDR upgrade. Moderate public debt, fiscal prudence and funding opportunities afforded by deep domestic capital markets continue to warrant some uplift for the Local-Currency IDR, but the low fiscal revenue take of just 23% of GDP weighs on Korea's local-currency credit profile.

참고 2 3대 신평사의 한국 신용등급 변경 내역

Fitch			Moody's			S&P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11. 11. 7	A+	positive	'10. 4. 14	A1	stable	'05. 7. 27	A	
'09. 9. 2		stable	'07. 7. 25	A2	stable	'04. 3. 12		stable
'08. 11. 10		negative	'06. 4. 25		positive	'02. 7. 24	A-	
'05. 10. 24	A+		'04. 6. 11		stable	'01. 11. 13	BBB+	
'03. 9. 16		stable	'03. 3. 12		negative	'99. 11. 11	BBB	
'02. 06. 27	A		'02. 3. 28	A3		'99. 1. 25	BBB-	
'00. 3. 30	BBB+		'99. 12. 16	Baa2		'98. 2. 18	BB+	
'99. 6. 24	BBB		'99. 2. 12	Baa3		'97. 12. 22	B+	
'99. 1. 19	BBB-		'98. 4. 9	Ba1		'97. 12. 11	BBB-	
'98. 2. 2	BB+		'97. 12. 10	Baa2		'97. 10. 24	A+	
'97. 12. 23	B-		'97. 11. 27	A3		'95. 5. 3	AA-	
'97. 12. 11	BBB-		'97. 10. 27	A1	Negative	'88. 10. 1	A+	
'97. 11. 26	A		'97. 3. 7		stable			
'97. 11. 18	A+		'86. 11. 18	A2				
'96. 6. 27	AA-							

참고 3 3대 신평사의 한국 신용등급 변경 내역

구분	등급 ²⁾	S&P	Fitch	Moody's
투자 등급	AAA(Aaa)	독일 ¹⁾ ,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³⁾ ,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AA+(Aa1)	미국(-), 벨기에(-)	벨기에, 호주, 홍콩	벨기에, 홍콩(+)
	AA (Aa2)		일본(-),	
	AA-(Aa3)	스페인(-), 사우디, 일본(-), 중국, 대만	사우디, 스페인(-)	사우디, 중국, 대만, 칠레, 일본
	A+(A1)	칠레(+)	한국(+), 중국, 칠레, 대만,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A (A2)	한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A-(A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말레이시아
	BBB+(Baa1)	남아공(-), 태국, 아일랜드	남아공, 아일랜드(-)	러시아, 멕시코, 태국
	BBB (Baa2)	러시아, 멕시코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태국(-)	브라질(+)
	BBB-(Baa3)	브라질, 인도 포르투갈(-)	인도, 포르투갈(-)	인도
투기 등급	BB+(Ba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BB (Ba2)	터키(+), 필리핀	이집트(-)	터키(+), 포르투갈(-) 필리핀,
	BB-(Ba3)	베트남(-), 이집트(-)		이집트(-)
	B+(B1)		베트남	베트남(-)
	B (B2)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B-(B3)			아르헨티나
	CCC+(Caa1)			
	CCC (Caa2)		그리스	
	CCC-(Caa3)			
	CC(Ca)	그리스(-)		그리스
D(C)				

주: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기준

3)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 전망, (+)는 긍정적 등급 전망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 본 자료는 2011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서 발표한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 한-미 FTA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既 발효된 FT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

I.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ASEAN, 인도,
 EU, 페루 등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
 충
 * 現 FTA 체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현재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 및 경제권의 경제
 규모가 약 61%에 달할 전망(세계 3위 수준*)
 * 주요국 경제영토(자국 GDP 포함, %): 칠레(87), 멕시코(72),
 한국(61)
- 한-미 FTA 발효시 세계 국토의 18%와 FTA를
 체결
- 그간의 FTA 발효는 우리 경제의 GDP 및 교역량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한 現 시점에서 既 발효된 FTA의 효과를 분석함으
 로써 FTA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공유
-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 및 경제권을 중
 심*으로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의 시사점을 도출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의
 FTA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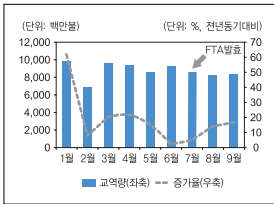
II. FTA 효과 분석

1 EU('11. 7월 발효): 유럽 재정위기 상황 감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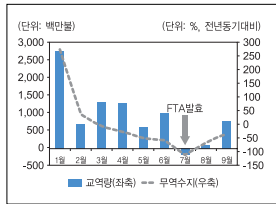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한
 가운데 한-EU FTA가 발효된 금년 7월 이후 對
 EU 교역량 및 무역수지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모두 회복세로 전환
- 발효 후 100일간(7. 1~10. 6) 유럽 재정위기로 對
 유럽 수출이 감소(△1.1%) 추세였으나 FTA 특혜품
 목*의 수출이 증가(17%)하여 전체 수출 감소분을
 상당분 상쇄
 * 수출 증가율(%): 자동차(110), 자동차부품(21), 석유제품(103),
 비혜택품목(△41)
- FTA 특혜품목만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

기 대비 31% 증가하여 對EU 무역수지가 8월 이후 흑자로 전환

'11년 對EU 교역 동향 '11년 對EU 무역수지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반면 FTA 특혜품목의 수입은 14% 증가
- 對EU 수입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여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수입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7월) 36.7 → (8월) 17.1 → (9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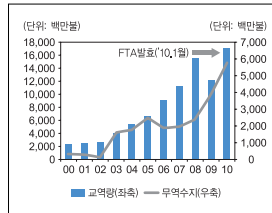
2 인도('10. 1월 발효)

- '00~'09년간 對인도 교역량은 평균 약 2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CEPA가 발효된 '10년 對인도 교역량은 40.8% 증가
- '10년 對인도 수출 증가율(42.7%)이 수입 증가율(37%)을 상회하며 무역수지(48.8%)도 크게 증가
- '10년 우리의 전체 교역증가율이 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CEP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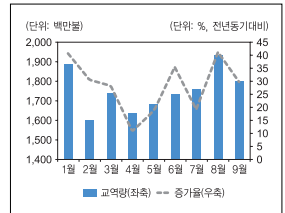
※ 전체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수출(28.3), 수입(31.6)

- '11. 9월까지 교역량(누적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함에 따라 '11년 교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최근 對인도 교역 동향 '11년 對인도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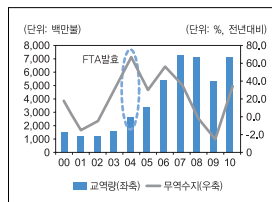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CEPA 발효 후 선박(147%), 증기발생보일러(357%)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알루미늄의 괴(406%), 아연의 괴(264%) 등의 수입 증가폭이 두드러짐
- 對인도 수출비중(금액기준)이 가장 큰 품목은 자동차 부속품(11.5%)이며 최대수입품목(금액기준)은 석유제품(54%)

3 칠레('14. 4월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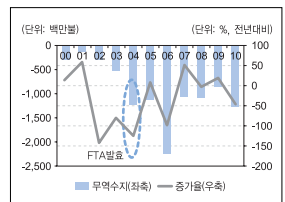
- 對칠레 교역은 FTA가 발효된 '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0년말 기준으로 71억달러 기록
- 교역량은 '04년 이후 연평균 약 24.1%로 증가하였으며 '10년에는 전년 대비 34.4% 증가
- '11. 9월 누계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교역량은 4.2% 감소

對칠레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칠레 무역수지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적자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03년 대비 '10년 수출 증가율(420%)이 수입 증가율(299%)을 상

회하면서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감소

*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 , 관세청) : '03년 34 → ('10년) 18

- 무역적자와 관련하여서는 FTA 발효 이후 정제한 동, 동광, 물리브덴광 등의 광물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

주요 수입품목 수입액 및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

품목	'03년	'10년	증가율('03~'10년)
정제된 동과 동합금	511	1924	276.5
동광과 그 정광	219	958	337.4
물리브덴광 그 정광	10	85	750

자료: 한국무역협회

4 ASEAN('07. 6월 발효)

- 한-ASEAN FTA에 힘입어 對ASEAN 교역규모와 무역수지가 꾸준히 증가
- 지난 4년간('06~'10년) 전체 교역규모가 연평균 약 9% 증가한 반면 對ASEAN 교역량은 12% 증가 - '11년 9월 누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하여 금년 對ASEAN 교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FTA 발효에 힘입어 ASEAN은 '10년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

對 ASEAN '06~'10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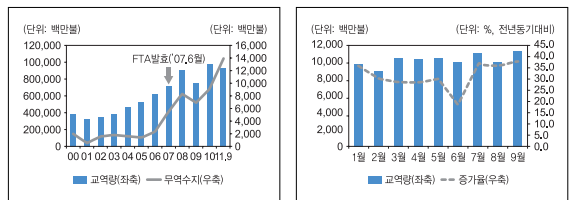
구분	전체(A)	對ASEAN(B)	차이(B-A)
수출	9.4	13.4	4.0
수입	8.2	10.3	2.1
교역	8.9	12.0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수지도 FTA 발효를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금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다만 '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對 ASEAN 교역량과 무역수지도 일시적으로 감소

對ASEAN 교역 및 무역수지 동향 '11년 對ASEAN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11. 9월은 연간누적수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5 페루('11. 8월 발효)

- '11년 들어 원자재 수입증가에 따라 8월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516백만달러 수준
- FTA가 발효 후 2개월간('11. 8~9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9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8.3% 증가하여 전체 수출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

우리나라 대페루 교역 동향

(단위: 천달러)

구분	'10년		'11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9월	8~9월	1~9월	8~9월	1~9월	8~9월	
페루	수출	683,514	134,138	1,022,752	263,094	49.6%	96.1%
	수입	688,435	119,385	1,615,901	308,360	134.7%	158.3%
전체	수출	337,637,194	75,891,837	415,280,353	92,765,275	23.0%	22.2%
	수입	309,485,048	70,276,744	393,083,737	90,730,168	27.0%	29.1%

- FTA 발효 후 對페루 무역수지는 45백만달러 적자 기록
- FTA로 인한 가격대체 효과로 우리나라 공산품 수

출이 증가한 반면 광물 등 원자재 수입규모도 증가 - 8월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광물 등 원자재의 구입선이 페루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對페루 교역 품목 중 수출 1위는 자동차이며, FTA 발효 후 합성수지, 철강판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주요 수출품목 변화

(단위: 천달러)

구분	'10년 8~9월	'11년 8~9월	증가율
자동차	57,622	88,493	53.6
합성수지	10,862	28,174	159.4
철강판	6,277	13,252	111.1

III. 평가 및 시사점

- **(경제영토 확대)** FTA 체결 국가 및 경제권과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

* 발효 1년 이상 FTA 비교시 연평균 교역규모 증가율은 한-인도 CEPA가, 무역수지 개선은 한-ASEAN FTA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對국회 및 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한-호주 FTA 협상을 금년 내 마무리
- FTA체결 경쟁이 치열한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개별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협상을 준비

- **(FTA 활용도 제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 인증수출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FTA 업무활용 매뉴얼' 등을 작성·

배포

- '해외통관 애로 해소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통관 분쟁 해결을 지원

- **(원산지 세탁방지 대책 강구)** 한-EU,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
- FT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 세탁 FTA 관세 혜택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우려

※ 제3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기재되어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1년 8월(누적)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

* 본 자료는 2011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팀에서 발표한 「2011년 8월(누적)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1년도 8월(누적)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 통합재정수지는 15.2조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6.4조원 적자를 시현
 - ※ 통합재정수지(15.2조원)=수입(204.6조원)-지출(189.4조원)
 - 관리대상수지(△6.4조원)=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흑자(21.6조원)
-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관리대상수지는 7.7조원) 개선
 - 통합재정수입은 국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조원 증가
 - * 수입 증가 내역: 국세수입(+12.6조원), 세외수입(+3.6조원), 사회보장기여금(+0.4조원)
 - 통합재정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조원 증가
 - * 8월 누계 통합재정지출 집행률 추이(%): ('07년) 65.3 → ('08년) 65.1 → ('09년) 68.6 → ('10년) 68.8 → ('11년) 67.7

'11. 8월(누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단위: 조원, %)

구 분	'10년			'11년			증감 (d-b)	
	예산 (a)	8월 (b)	결산 (b/a)	예산 (c)	8월 (d)	예산대비 (d/c)		
A. 통합재정수입	262.3	188.1	270.9	71.7	284.8	204.6	71.8	16.5
B. 통합재정지출	264.3	181.8	254.2	68.8	279.5	189.4	67.7	7.5
C. 통합재정수지 (A-B)	△2.0	6.2	16.7	-	5.3	15.2	-	9.0
D.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28.1	20.3	29.7	-	30.3	21.6	-	1.3
E. 관리대상수지 (C-D)	△30.1	△14.1	△13.0	-	△25.0	△6.4	-	7.7
(GDP 대비, %)	(△2.7)	(-)	(△1.1)	-	(△2.0)	(-)	-	-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

* 본 자료는 2011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보다 엄격하게 심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금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수행
 - 보조사업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이외에 경제·복지·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도 포함시켜 평가의 전문성 제고
 - * 단장 : 공동성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 평가위원 26명
-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감축 17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
 - * 선정기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중 보조사업 선별('11년 예산 5.9조원)
- '12년 예산안 편성시 동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 필요 87개 사업은 '11년 대비 △1,268억원 삭감(△10.3%)하였음
 - 국토부 화물차 개조 등 25개 사업폐지·통폐합 (△438억원, △14.8%)
 -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 감축 (△696억원, △21.3%)
 -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방식 변경(△134억원, △2.2%)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

		사업 수	'11	'12안	증감	증가율
합계		87	12,364	11,096	△1,268	△10.3
• 폐지	소계	25	2,953	2,515	△438	△14.8
	즉시 폐지	9	103	-	△103	△100.0
	단계적 폐지	7	245	112	△133	△53.5
	통폐합	9	2,605	2,403	△202	△7.8
• 조건부 존치	소계	62	9,411	8,581	△830	△8.8
	단계적 감축	17	3,270	2,574	△696	△21.3
	사업방식변경	45	6,141	6,007	△134	△2.2

- 167개 정상추진 사업은 3.2% 증가(4.7조원 → 4.8조원)
- 금번 평가 비대상 사업은 4.3% 증가(37.8조원 → 39.4조원)
 - ⇒ 이에 따라 '12년 국고 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도 1,989개로 금년 대비 64개 감소하였음

	'10년	'11년	'12년(안)
• 보조금 총계(조원)	42.7	43.7	45.3
• 보조사업 수(개)	2,081	2,053	1,989

- 금번 평가를 통해 그동안 폐지·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또한,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참고 단계적 감축·사업방식 변경·폐지 사업 예시

사업명	평가결과 요약 및 예산반영 현황
① '12년 폐지	
(국토부) 화물차 개조 지원	•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결여 * ('11) 20억원 → ('12년) -
(교과부)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지원	•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므로 국가지원 필요성 미흡 * ('11) 30억원 → ('12년) -
(농림부)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 소규모 영세사업으로 한미FTA 협정에 따른 대책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미흡 * ('11) 4억원 → ('12년) -
(복지부) 농어촌 지역소규모 보육 서비스제공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사업 및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지원사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통합 * ('11) 18억원 → ('12년) -
(지경부) 민간표준 활동 지원	• 민간표준협회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11) 18억원 → ('12년) -
② 단계적 폐지 및 통폐합	
(문화부)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13년 폐지 * ('11) 75억원 → ('12년) 11억원(△64억원)
(문화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 외부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13년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11) 55억원 → ('12년) 21억원(△34억원)
(환경부) 녹색생활 확산 및 선도사업 지원	• 외부성의 정도가 크지 않아 '13년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11) 48억원 → ('12년) 20억원(△28억원)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패키지+특허 기술거래시스템 운영	• 유사성격 사업으로 통합
(행안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 유사성격 사업으로 통합
③ 단계적 감축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 금융위기시 지원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 필요 * ('11) 1,244억원 → ('12년) 532억원(△712억원)

사업명	평가결과 요약 및 예산반영 현황
(산림청) 산림 서비스 증진	•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산림서비스 증진에 대한 원래 목적에 충실할 필요 * ('11) 146억원 → ('12년) 127억원(△19억원)
(중기청)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성과지표 설정 미흡 * ('11) 70억원 → ('12년) 60억원(△10억원)
(문화부) 문화를 통한전통시장 활성화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 강화 필요 * ('11) 32억원 → ('12년) 15억원(△17억원)
(복지부) 사회복무 요원 직무교육	• 2주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1인당 사업비가 과다 한편으로 절감 운영 필요 * ('11) 73억원 → ('12년) 69억원(△4억원)
④ 사업방식 변경	
(산림청) 숲가꾸기	• 성과가 낮은 공공산림가꾸기는 대폭 축소 (5,265 → 3,265명)하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중점 지원 * ('11) 2,191억원 → ('12년) 2,001억원(△190억원)
(교과부)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 '12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사업방식 변경 * ('11) 21억원 → ('12년) 19억원(△2억원)
(국토부) 독도지속 가능 이용 및 보존	• 사업추진체계를 개별부처 차원이 아닌 독도위원회에서 총괄할 필요 * ('11) 114억원 → ('12년) 43억원(△71억원)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본 자료는 2011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발표한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앞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과태료·과징금 등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 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과태료·과징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기도 해서 주민의 자기부담 실현을 위해서도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 징수율(09) : 국세 88.3%, 지방세 91.5%, 지방세외수입 58.7%
 - ※ 세외수입 체납액 '07년 5.4조 → '08년 5.9조 → '09년 6.2조 → '10년 6.3조원(지방세는 3.4조원)
- 한편,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렵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징수체계와 국민권익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지방세의수입 개요

- 의의
 - 과태료(법규 위반),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세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
 - 법령상으로는 이외에 임대료, 부담금, 분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위약금, 기부금 등 매우 다양함
 - * (가정)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인감증명 수수료 등
 - * (문화) 문예회관·공원 등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 등
 - * (경제) 택지개발수입, 공영영화 임대료, 유료도로 사용료 등

■ 규모: 29조 5,784억원(지방재정 전체의 21%)

지방재정 세입구성(2011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조원)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141(비중, %)	49.7(35.3)	29.6(21.0)	27.4(19.4)	30.6(21.7)	3.7(2.6)

■ 유형별 규모 및 체납액

세외수입 29조 5,784억원(2011년 당초예산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 11조 8,917억원 (40.2%)				임시적 세외수입 17조 6,867억원 (59.8%)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등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4,599 (1.6%)	59,066 (20.0%)	9,275 (3.1%)	45,977 (15.5%)	11,210 (3.8%)	85,686 (29.0%)	18,226 (6.1%)	61,745 (20.9%)
분야별 체납액(2010 결산 기준, 총 1조 2,159억원)							
109 (0.9%)	296 (2.4%)	21 (0.2%)	700 (5.8%)	100 (0.8%)	0	3,917 (32.2%)	7,016 (57.7%)

* 체납액(10년 결산): 총 6조 2,883억원(위 표의 분야별 체납액 1조 2,159억원+지난연도 누적체납액 4조 3,526억원+공기업특별회계 등 7,198억원)

참고 2 현행법상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현황 비교

구분	국세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	
				현재	법제정
명단공개	○ (2년/7억원)	○ (2년/3천만원)	X	X	○ (1천만원)
출국금지	○ (5천만원)	○ (5천만원)	X	X	○ (1천만원)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 (3회/500만원)	○ (3회/100만원)	○ (3회/1년/500만원)	X	○ (1백만원)
체납정보 제공	○ (3회/1년/500만원)	○ (3회/1년/500만원)	○ (3회/1년/500만원)	X	○ (1년,5백만원)
납부증명서 제출	○	○	○	X	○
감치(대체강제구류)	X	X	○ (1년/천만원)	X	X

참고 3 법률 제정안 편제

편 제	주 요 내 용	유사 입법례
1장 총칙 (§ 1~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용어 정의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징수권, 기간과 기한 •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1장 지방세기본법 1장
2장 납부의무 (§ 17~ §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의무 확정 · 승계 · 소멸 • 제척기간,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3장 지방세기본법 2장
3장 부과 (§ 22~ §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 고지서 발급, 납부 기한 • 가산금, 증가산금 • 독촉 	국세기본법 5장 국세징수법 2장 지방세기본법 3장
4장 징수 (§ 29~ §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강제수단(관허사업 제한, 공급유보, 과세자료 제공 등) •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외수입환급금, 환급이자 • 징수유예 	국세기본법 6장 국세징수법 1장, 2장 지방세기본법 4장
5장 체납처분 (§ 48~ §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압류해제 •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3장 지방세기본법 5장
6장 타 채권과의 관계 (§ 56~ §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우선순 위 	국세기본법 4장 지방세기본법 6장
7장 이의신청 (§ 59~ §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대상 · 절차 · 효력 • 지방세외수입심의위원회 	국세기본법 7장 지방세기본법 8장
8장 지방세외 수입의 관리 (§ 69~ §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외수입 과목 설정 등 • 운영사항 보고 및 분석 등 • 세외수입업무의 정보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9장 보 칙 (§ 73~ §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징수성과금 지급 • 지방세외수입 감면 제한 • 전자송달, 전자납부 우대조치 	국세기본법 8장 지방세기본법 10장
부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경과조치 • 다른 법률의 개정 	



| 재정통계 |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지출액(연도별)
- 국가채무총괄

1.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방위비	16,171,267	17,400,132	18,491,391	19,995,120	21,975,932	23,428,111
가. 국방비	15,496,841	16,671,633	17,706,771	19,153,796	21,049,440	22,439,561
(1) 경상운영	10,316,498	11,080,478	12,079,914	13,057,443	14,115,917	16,792,484
(2) 전력투자	5,180,344	5,591,154	5,626,856	6,096,353	6,933,523	5,647,077
나. 기타 방위비	674,426	728,499	784,620	841,324	926,491	988,549
(1) 병무행정	131,831	124,512	112,541	124,491	130,976	138,298
(2) 전.해경지원	542,595	603,987	672,079	716,833	795,516	850,251
2. 교육비	17,868,588	18,726,285	20,749,658	22,112,749	27,466,891	28,456,767
가. 교육및인적자원	17,868,588	18,726,285	20,749,658	22,112,749	27,466,891	28,456,767
(1) 초·중등교육	15,245,248	15,908,886	17,668,022	18,862,297	24,455,424	25,327,608
(2) 인적자원개발 ¹⁾	1,953,163	2,139,521	2,330,891	2,079,550	2,518,616	2,664,826
(3) 특수교육	20,908	23,083	31,013	37,580	35,174	34,402
(4) 실업교육	527,415	544,056	561,404	555,930	308,891	273,146
(5) 사회교육	59,199	65,003	76,575	76,388	78,831	85,004
(6) 교육인적자원행정	62,654	45,735	81,752	501,003	69,955	71,780
3. 사회개발	13,606,055	13,846,376	15,331,704	16,579,986	17,897,232	19,690,641
가. 문화및관광	1,283,707	1,363,029	1,481,407	1,529,682	1,167,648	1,304,405
(1) 문화예술	895,761	948,681	1,057,580	1,204,968	1,080,805	1,197,990
(2) 관광진흥	190,919	225,883	254,077	194,285	3,010	4,426
(3) 청소년육성및체육	197,027	188,465	169,750	130,429	83,832	101,989
나. 환경개선	802,059	665,099	773,374	607,479	1,878,037	1,820,160
(1) 상·하수도	325,387	236,905	231,241	241,680	331,237	163,957
(2) 환경보전	476,672	428,194	542,133	365,799	1,546,800	1,656,203
다. 사회보장	10,783,182	10,720,420	11,728,430	12,987,603	13,669,592	15,412,431
(1) 사회보험	2,914,270	2,843,789	3,172,833	3,924,222	4,266,641	4,680,142
(2) 보훈	1,408,741	1,618,712	1,964,025	2,121,461	2,246,996	2,505,322
(3) 근로자복지	194,201	194,063	194,567	259,315	240,894	299,472
(4) 기타사회복지	5,266,342	5,090,310	5,327,634	5,456,539	5,806,683	7,031,591
(5) 직업훈련	206,513	204,239	212,803	234,742	241,228	229,587
(6) 직업안정	310,142	216,644	155,046	235,037	200,717	168,258
(7) 보건위생	367,752	395,115	516,038	536,793	410,442	218,374
(8) 보건복지행정	115,221	157,549	185,483	219,494	255,992	279,685
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37,108	1,097,829	1,348,493	1,455,222	1,181,955	1,153,645
(1) 주택	647,708	924,179	1,117,622	1,240,181	1,108,125	1,080,982
(2) 지역사회개발	89,399	173,650	230,871	215,041	73,830	72,663
4. 경제개발	25,493,010	31,995,767	32,499,345	30,752,854	28,248,832	30,114,564
가. 농림수산업개발	4,888,791	7,054,522	7,401,135	7,022,609	6,542,934	6,776,855
(1) 농업·농촌	3,894,894	5,899,751	5,684,200	5,574,342	5,116,579	5,132,772
(2) 어업·어촌	257,833	307,063	597,537	394,362	375,424	344,142
(3) 임업·산촌	349,924	397,140	605,801	554,725	532,626	652,529
(4) 농림수산업행정	386,140	450,568	513,596	499,180	518,306	647,412
나. 국토보존개발	1,925,158	5,175,079	3,035,714	2,422,957	1,793,739	2,801,147
(1) 수자원개발	226,279	181,302	312,407	197,796	219,178	213,591
(2) 치수및재해대책	1,644,127	4,942,360	2,642,190	2,043,857	1,391,443	2,431,855
(3) 국토계획조사	54,751	51,417	81,116	181,304	183,118	155,701
다. 상공업	2,388,880	2,415,189	2,947,230	3,208,123	2,106,756	2,565,012
(1) 공업진흥	194,480	160,458	273,617	233,956	66,804	81,167

1.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계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 중소기업지원	1,596,659	1,664,981	1,842,440	2,091,478	1,431,704	1,881,847
(3) 수출및기타상공지원	556,274	537,121	772,419	502,964	458,159	484,139
(4) 산업지원행정	41,467	52,629	58,755	379,725	150,089	117,859
라. 에너지및자원개발	3,752	4,061	4,218	3,378	3,226	3,200
(1) 에너지개발	632	931	920			
(2) 광업자원개발	3,120	3,130	3,297	3,378	3,226	3,200
마. 수송및통신	13,635,086	14,279,402	15,675,753	14,458,328	14,040,575	13,902,565
(1) 철도건설	794,025	904,424	1,065,774	1,073,202	2,155,388	2,040,804
(2) 도로	8,260,288	8,274,191	8,557,870	7,662,654	6,824,723	6,362,813
(3) 해운및항만	818,648	1,023,665	1,407,422	1,452,633	1,494,172	1,619,500
(4) 항공	257,317	195,721	270,389	373,675	415,115	388,434
(5) 통신	394,770	242,443	280,169	141,914	180,652	163,421
(6) 도시교통	3,016,043	3,420,750	3,810,364	3,440,748	1,633,332	1,822,105
(7) 유통및보관	8,320	18,573	49,875	63,637	29,478	87,599
(8) 건설교통행정	85,675	199,636	233,889	249,866	1,307,714	1,417,888
바. 과학기술	2,651,343	3,067,512	3,435,296	3,637,458	3,761,602	4,065,786
(1) 연구활동지원	1,730,333	2,007,923	2,198,227	2,404,605	2,301,176	2,475,933
(2) 기술개발	803,180	928,845	1,073,907	1,071,310	1,267,091	1,268,770
(3) 기타과학기술진흥	117,830	130,745	163,161	161,543	193,335	321,083
5. 일반행정	9,190,210	10,138,789	12,693,413	11,908,856	14,742,782	17,208,340
가. 입법 및 선거관계	302,544	521,746	416,910	638,723	507,078	566,023
(1) 국회	194,996	218,932	250,563	293,582	335,286	345,475
(2) 중앙선관위	107,548	302,814	166,347	345,142	171,792	220,549
나. 사법 및 경찰	5,400,976	5,912,918	6,433,661	6,834,706	7,333,314	7,834,331
(1) 법원및헌법재판소	448,031	511,137	580,116	637,067	681,582	753,274
(2) 법무및검찰	475,694	535,857	611,252	658,750	725,081	770,268
(3) 교도	614,277	681,423	732,849	790,817	839,893	912,301
(4) 경찰	3,862,974	4,184,501	4,509,443	4,748,072	5,086,758	5,398,488
다. 일반행정	3,486,689	3,704,125	5,842,842	4,435,426	6,902,390	8,807,986
(1) 일반행정	1,859,035	1,920,974	3,855,655	2,245,050	4,624,762	6,467,202
(2) 외교통상행정	610,576	676,256	787,190	890,879	923,920	917,672
(3) 징세행정	974,024	1,058,585	1,149,195	1,243,545	1,292,010	1,352,440
(4) 홍보비	43,054	48,309	50,802	55,952	61,697	70,673
6. 지방재정지원	12,288,991	12,259,425	14,802,209	14,389,254	20,017,486	21,405,123
가. 지방재정교부금	12,288,991	12,259,425	14,802,209	14,389,254	20,017,486	21,405,123
(1) 지방재정교부금	12,288,991	12,259,425	14,802,209	14,389,254	20,017,486	21,405,123
7. 채무상환기타	2,633,514	2,389,067	2,305,190	2,222,420	3,664,448	4,182,469
가. 채무상환	1,962,203	1,709,436	1,698,344	1,841,048	2,173,794	2,345,329
(1) 채무상환	1,962,203	1,709,436	1,698,344	1,841,048	2,173,794	2,345,329
나. 제지출금 및 기타	271,411	283,531	201,646	58,763	1,153,043	1,504,313
(1) 제지출금기타	271,411	283,531	201,646	58,763	1,153,043	1,504,313
다. 예비비	399,900	396,100	405,200	322,609	337,611	332,827
(1) 예비비	399,900	396,100	405,200	322,609	337,611	332,827
8. 재특회계지원	1,416,900	2,162,440	350,000	275,000	194,073	350,000
가. 제지출금 및 기타	1,416,900	2,162,440	350,000	275,000	194,073	350,000
(1) 제지출금기타	1,416,900	2,162,440	350,000	275,000	194,073	350,000
합 계	98,668,535	108,918,281	117,222,909	118,236,238	134,207,676	144,836,014

1.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계속>

(단위: 백만원)

구 분 ^{라)}	2007	2008	2009
1. 일반공공행정	16,171,267	17,400,132	18,491,391
(1) 입법및선거관리	15,496,841	16,671,633	17,706,771
(2) 국정운영	10,316,498	11,080,478	12,079,914
(3) 지방행정·재정지원	5,180,344	5,591,154	5,626,856
(4) 재정·금융	674,426	728,499	784,620
(5) 정부자원관리	131,831	124,512	112,541
(6) 일반행정	542,595	603,987	672,079
2. 공공질서 및 안전	17,868,588	18,726,285	20,749,658
(1) 법원및헌재	17,868,588	18,726,285	20,749,658
(2) 법무및검찰	15,245,248	15,908,886	17,668,022
(3) 경찰	1,953,163	2,139,521	2,330,891
(4) 해양	20,908	23,083	31,013
(5) 재난방재·민방위	527,415	544,056	561,404
3. 통일·외교	59,199	65,003	76,575
(1) 통일	62,654	45,735	81,752
(2) 외교·통상	13,606,055	13,846,376	15,331,704
4. 국방	1,283,707	1,363,029	1,481,407
(1) 병력운영	895,761	948,681	1,057,580
(2) 전력유지	190,919	225,883	254,077
(3) 방위력개선	197,027	188,465	169,750
(4) 병무행정	802,059	665,099	773,374
5. 교육	325,387	236,905	231,241
(1) 유아및초중등교육	476,672	428,194	542,133
(2) 고등교육	10,783,182	10,720,420	11,728,430
(3) 평생·직업교육	2,914,270	2,843,789	3,172,833
(4) 교육일반	1,408,741	1,618,712	1,964,025
6. 문화 및 관광	194,201	194,063	194,567
(1) 문화예술	5,266,342	5,090,310	5,327,634
(2) 관광	206,513	204,239	212,803
(3) 체육	310,142	216,644	155,046
(4) 문화재	367,752	395,115	516,038
(5) 문화및관광일반	115,221	157,549	185,483
7. 환경보호	737,108	1,097,829	1,348,493
(1) 해양	647,708	924,179	1,117,622
(2) 환경보호일반	89,399	173,650	230,871
8. 사회복지	25,493,010	31,995,767	32,499,345
(1) 기초생활보장	4,888,791	7,054,522	7,401,135
(2) 취약계층지원	3,894,894	5,899,751	5,684,200
(3) 공적연금	257,833	307,063	597,537
(4) 보육·가족및여성	349,924	397,140	605,801
(5) 노인·청소년	386,140	450,568	513,596
(6) 노동	1,925,158	5,175,079	3,035,714
(7) 보훈	226,279	181,302	312,407
(8) 주택	1,644,127	4,942,360	2,642,190
(9) 사회복지 일반	54,751	51,417	81,116

구 분 ^{라)}	2007	2008	2009
9. 보건	3,555,180	4,180,067	5,370,154
(1) 보건의료	276,791	498,387	1,009,031
(2) 건강보험	3,111,027	3,512,444	4,160,326
(3) 식품의약안전	167,361	169,237	200,796
10. 농림해양수산	7,294,512	6,340,786	6,440,321
(1) 농업·농촌	5,734,980	4,859,274	4,716,115
(2) 임업·산촌	881,732	878,676	1,310,676
(3) 해양수산·어촌	677,800	602,837	413,530
11. 산업·중소기업	3,353,421	5,461,632	8,315,659
(1) 산업금융지원	646,899	571,000	3,673,130
(2) 산업기술지원	310,110	369,195	417,896
(3) 무역및투자유치	346,952	380,355	1,022,746
(4) 산업 진흥·고도화	1,348,192	1,522,611	2,077,684
(5) 에너지및자원개발	339,700	2,318,165	538,495
(6) 산업·중소기업일반	361,569	300,305	585,708
12. 수송 및 교통	14,384,715	15,458,851	19,236,654
(1) 도로	6,500,927	7,093,615	8,834,938
(2) 철도	3,639,363	3,989,649	5,182,825
(3) 도시철도	1,287,472	1,407,442	1,684,739
(4) 해운·항만	1,781,289	1,757,844	1,792,242
(5) 항공·공항	318,995	146,263	16,548
(6) 물류등기타	856,669	1,064,038	1,725,362
13. 통신	779,206	813,975	545,942
(1) 정보통신	779,206	813,975	545,942
14. 국토 및 지역개발	4,313,555	6,441,740	8,777,703
(1) 수자원	1,672,528	833,209	1,744,271
(2) 지역 및 도시	2,572,244	5,543,415	7,011,762
(3) 산업단지	68,783	65,116	21,670
15. 과학기술	2,216,520	2,437,584	3,053,605
(1) 기술개발	820,757	845,660	1,230,147
(2) 과학기술연구지원	1,150,046	1,322,479	1,550,908
(3) 과학기술일반	245,718	269,446	272,550
16. 예비비	354,177	322,814	333,954
(1) 예비비	354,177	322,814	333,954
합 계	154,330,868	175,469,505	199,875,979

주: 1. 기능별 세출예산은 2001년 새로운 분류체계에 전환됨
 2. 기능별 지출액 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2000년 이전의 통계세 부자료는 재정포럼 2003년 5월호에 수록되어 있음
 1) 인적자원개발은 2004년 이전에는 대학교육의 항목에 해당됨
 2) 2007년 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구분이 개편됨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연도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결산개요』, 각 연도

2.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지출액(연도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100 인건비	8,217,609	8,743,939	9,567,545	10,697,290	11,435,390
101 보수 ¹⁾	7,809,247	8,366,106	9,241,611	10,348,929	11,074,494
102 비정규직보수	408,361	377,833	325,933	348,361	360,897
200 물건비	8,681,000	9,704,840	10,573,171	11,056,190	12,128,933
201 관서운영비	4,747,020	5,125,672	5,383,584	5,553,140	5,855,567
202 여비	258,365	280,527	306,586	346,455	362,168
203 특수활동비	436,447	479,616	497,958	542,200	664,311
204 업무추진비	1,051,417	1,072,382	1,141,304	1,193,338	1,352,389
205 복리후생비	1,650,056	2,101,353	2,501,802	2,755,422	3,308,940
206 용역비	463,300	557,234	638,374	545,477	456,324
207 시험연구비	74,395	88,057	86,607	102,475	110,987
209 학교운영비			16,955	17,684	18,245
210 직무수행경비					
300 경상이전	30,855,288	34,249,482	47,128,064	48,039,929	56,476,882
301 보상금	3,845,008	4,216,271	6,083,061	4,958,694	5,713,623
302 배상금	21,347	25,316	18,944	18,614	24,226
303 출연금	5,132,589	5,052,656	5,670,040	5,927,032	8,419,536
304 민간경상이전	1,928,077	2,181,704	2,213,991	2,821,484	2,834,801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19,284,169	21,871,117	31,623,543	32,516,064	37,048,305
306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235,643	440,299	988,873	1,203,303	1,782,556
307 해외경상이전	377,991	437,018	505,510	588,935	650,728
308 차입금이자	30,462	25,101	24,102	5,804	3,107
400 자본지출경비	7,758,820	8,965,629	8,856,789	13,668,722	11,863,009
401 기본조사설계비	13,626	10,606	17,713	12,976	17,857
402 실시설계비	34,682	39,657	39,425	34,809	53,490
403 토지매입비	249,479	372,680	440,491	346,021	427,532
404 시설비	2,001,232	1,856,276	2,135,789	1,970,511	2,575,139
405 감리비	21,548	21,340	28,128	33,284	44,574
406 시설부대비	7,836	7,051	8,649	8,912	11,079
407 자산취득비	2,988,123	3,915,700	3,280,184	3,994,767	4,040,484
408 차관물자용역비	43,074	12,804	40		
411 민간자본이전	359,225	419,321	315,914	389,906	405,358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2,038,369	2,073,686	2,372,915	6,590,346	3,915,060
413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1,627	233,267	216,221	283,734	366,363
414 해외자본이전	-	3,242	1,319	3,455	6,073
500 융자금및출자금	1,101,558	1,011,145	775,917	849,897	1,205,153
502 출자금	1,101,558	1,011,145	775,917	849,897	1,205,153
600 보전지출	99,620	82,825	181,569	71,297	28,258
601 국내차입금상환	10,343	22,872	0		
602 해외차입금상환	89,278	59,952	181,569	71,297	28,258
700 정부내부거래	23,372,492	24,303,616	21,184,455	24,138,184	23,679,284
701 전출금	21,733,433	22,127,651	18,919,405	22,147,321	21,715,355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1,477,189	2,021,592	2,110,015	1,845,439	1,822,751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161,871	154,373	155,036	145,424	141,178
800 예비비및기타	423,500	403,015	401,025	396,773	406,000
801 예비비	423,000	402,500	399,900	396,100	405,200
802 예비금	-	-	0	0	-
803 반환금기타	500	515	1,125	673	800
합 계	80,509,887	91,647,544	98,668,535	108,918,281	117,222,909

주: 1) 2003년 이전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
 2) 무형고정자산액
 3) 2007년 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 성질별 구분이 개편됨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연도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결산개요』, 각 연도

3. 국가채무총괄

(단위: 1948~59년도백만원, 1960~2009년도 백만원)

연 도	국내차입금	국 채	국고채무부담 행위	정부차관	중앙정부채무	정부보증채무	국가채무총계
1948	499	-	-	-	-	-	-
1949	1,061	-	-	-	-	-	-
1950	2,630	100	-	-	-	-	-
1951	2,576	545	-	-	-	-	-
1952	370	1,573	-	-	-	150	-
1953	30,585	3,533	231	-	34,349	3,438	37,787
1954	54,708	6,597	74	-	61,379	6,339	67,718
1955	62,022	55,169	-	-	-	18,932	-
1957	80,120	90,683	3,402	-	174,205	33,601	207,806
1958	104,430	99,359	3,645	-	207,434	49,357	256,791
1959	133,415	101,178	4,611	-	239,204	39,900	279,104
1960	21,923	10,686	900	-	33,509	8,054	41,563
1961	25,209	13,571	1,854	-	40,634	10,914	51,548
1962	27,827	17,515	2,658	-	48,000	15,408	63,408
1963	28,088	19,317	1,265	4,836	53,506	35,024	88,530
1964	32,257	18,285	3,228	13,531	67,301	54,180	121,481
1965	29,576	16,916	10,345	15,333	72,170	79,810	151,980
1966	31,124	15,635	12,564	35,212	94,535	122,804	217,339
1967	37,376	14,542	17,595	60,429	129,942	149,305	279,247
1968	32,428	16,806	27,917	82,599	159,750	157,280	317,030
1969	55,363	31,368	38,892	111,179	236,802	163,845	400,647
1970	59,981	37,491	40,728	205,355	343,555	162,875	506,430
1971	58,728	47,623	40,081	343,786	490,218	195,043	685,261
1972	181,151	72,456	48,487	480,254	782,348	243,524	1,025,872
1973	233,061	75,312	54,510	613,459	976,342	278,585	1,254,927
1974	423,203	66,854	104,025	873,621	1,467,703	282,754	1,750,457
1975	713,834	199,878	266,856	1,164,058	2,344,626	375,923	2,720,549
1976	854,225	376,891	350,540	1,422,818	3,004,474	420,033	3,424,507
1977	977,271	635,115	410,045	1,727,647	3,750,078	937,936	4,688,014
1978	1,144,495	911,956	506,228	2,148,081	4,710,759	1,200,441	5,911,200
1979	1,024,904	1,271,927	554,718	2,370,678	5,222,227	1,477,308	6,699,535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연도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결산개요』, 각 연도

3. 국가채무총괄 <계속>

(단위: 1948~59년도백만원, 1960~2009년도 백만원)

연 도	국내차입금	국 채	국고채무부담 행위	정부차관	중앙정부채무	정부보증채무	국가채무총계
1980	1,373,994	1,595,478	644,361	3,838,855	7,452,688	2,381,785	9,834,473
1981	2,001,737	2,111,077	910,620	4,508,407	9,531,841	3,364,428	12,896,269
1982	2,297,787	3,540,540	863,532	5,329,836	12,031,695	4,387,145	16,418,840
1983	2,617,171	3,827,007	839,182	5,974,867	13,258,517	5,396,966	18,655,483
1984	2,591,402	3,667,458	750,983	6,373,867	13,383,710	6,288,475	19,672,185
1985	2,648,655	3,249,527	1,049,399	7,328,386	14,275,967	7,247,376	21,523,343
1986	2,430,400	3,418,488	1,362,053	7,816,652	15,027,593	7,774,832	22,802,425
1987	3,040,754	6,494,878	1,496,224	7,856,632	18,888,188	6,782,044	25,670,532
1988	3,409,255	7,838,830	1,709,606	5,969,395	18,927,086	6,251,944	25,179,000
1989	3,220,800	10,688,728	2,076,585	5,106,956	21,093,069	6,227,951	27,321,020
1990	2,753,428	13,742,204	2,490,277	5,559,255	24,545,165	7,188,108	31,733,272
1991	2,053,663	17,083,057	2,843,999	5,700,375	27,681,094	9,842,905	37,523,999
1992	2,267,614	19,948,112	3,237,313	5,521,074	30,974,113	13,687,777	44,661,890
1993	2,678,957	20,825,248	3,848,244	5,493,874	32,846,324	11,765,773	44,612,097
1994	2,819,622	21,979,824	3,966,283	5,666,165	34,431,892	13,324,194	47,756,086
1995	3,000,598	23,294,738	4,089,111	5,241,583	35,626,030	15,028,901	50,654,931
1996	2,978,913	25,657,353	3,140,810	5,050,566	36,827,642	7,612,084	44,439,726
1997	3,169,891	28,554,331	3,408,091	15,321,600	50,453,913	13,038,912	63,492,825
1998	2,975,510	46,648,334	3,028,794	18,784,671	71,437,309	71,953,347	143,390,656
1999	2,443,300	65,806,016	2,522,439	18,942,862	89,714,617	81,504,595	171,219,211
2000	1,900,700	76,325,192	2,709,814	20,005,879	100,941,585	74,565,372	175,506,957
2001	2,103,970	87,757,498	2,822,145	20,432,081	113,115,694	106,769,559	219,885,253
2002	2,295,490	103,131,441	2,762,838	18,439,970	126,629,739	102,471,355	229,101,094
2003	3,170,000	140,633,198	2,441,381	12,580,131	158,824,711	80,590,227	239,414,938
2004	2,040,000	182,931,602	2,499,976	8,614,933	196,086,512	66,049,789	262,136,301
2005	2,055,000	229,001,843	2,138,792	5,570,326	238,765,961	54,977,917	293,743,878
2006	2,157,200	264,317,353	2,460,183	4,278,914	273,213,650	36,510,070	309,723,720
2007	2,167,200	280,465,530	2,912,054	3,557,006	289,101,790	33,062,910	322,164,700
2008	1,457,200	289,425,356	3,233,604	3,829,395	297,945,555	28,112,846	326,058,401
2009	2,762,000	337,495,956	3,192,590	3,829,395	346,108,881	29,818,431	375,927,312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세계는 지금 부유세 폐지중

부자들이 가진 순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본래 의미의 부유세는 현재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변형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1910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부유세는 한때 북유럽 국가들이 도입해 복지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하나 둘 폐지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핀란드가, 2008년에는 스웨덴마저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유세가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는 노르웨이와 프랑스 정도에만 부유세가 남아 있다. 프랑스도 전세계적인 부유세 폐지 추세에 맞춰 부유세를 내야 하는 부자 기준을 점차 높여 과세 대상을 줄여 나가고 있다.

명맥만 유지하던 부유세에 다시 불을 지핀 곳은 미국이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이 다른 계층과 비교해 세금을 동등하게 내거나 더 부담해야 한다는 워런 버핏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는 고소득자의 실질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종의 증세안으로 본래의 부유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은 심한 편이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부유세를 도입했거나 고려중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과세 범위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11-11-8일자)

탈세처벌 더 강화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손질

정직한 납부를 유도하려면 세율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되 적발 시 벌과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세금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근은 세율 인하다. 공공 숨어 있는 세율을 양지로 끌어내면 대다수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채찍은 탈세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강화다.

또 다른 근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금융 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소득을 숨기는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도 가명으로 하고 대다수 현금 거래만 한다”면서 “거래에 반드시 금융회사가 끼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 이름을 숨길 수 없고 신고 금액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줄이려면 수수료 등에 대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정부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

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수십 년 된 카드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이 밖에 탈루된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체납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손 처리한 조세채권은 35조 6,004억원에 달했다. 체납발생 총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18조 4,768억원에서 2010년 22조 2,234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매일경제 2011-11-3일자〉

카드 소득공제 고소득층 더 혜택

2014년 말까지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상·하위 20% 신용카드 공제 혜택

(인당 기준)

소득	소득공제 신고액	세금 감면 혜택
상위 10%	284만원	68만 1600원
상위 20%	267만원	64만 800원
하위 20%	177만원	10만 6200원
하위 10%	171만원	10만 2600원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8일 한국조세연구원 송헌재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신고한 납세자는 총 625만 3,955명으로, 이들이 감면 받은 세금 총액은 1조 8,394억원이다.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과세표준 10분위 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별로 세금 혜택 차이가 컸다. 상위 10%와 20%의 1인당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신고 금액은 각각 284만원, 267만원이었으며 하위 10%와 20%는 각각 171만원, 177만원이었다. 소득공제 신고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이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은 더 크다.

즉, 상위 10%의 경우 284만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평균 총급여가 8,35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68만 1,600원을 내지 않았다. 반면 하위 10%는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받아 171만원에 대해 10만 2,600원을 감면받았을 뿐이다.

여기에 상위 10%의 소득공제 신고 인원은 63만 2,775명으로 하위 10%(30만 9786명)의 2배 이상인 데다 같은 상위 10%라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서면 최고 소득세율(2010년 기준 35%)을 적용받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상위 10%가 누리는 세금 감면 혜택이 훨씬 큰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상위 10% 내에서도 총급여 4억원까지 세금 경감효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2011-10-29일자〉

직불카드 세금감면 혜택 등 늘려 카드 ‘수수료 분쟁’ 해결 나서야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카드 수수료를 내리게 만드는 첩경은 소액결제에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바로 우리가 채택한 제도 때문이다.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카드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카드를 받지 않는 사업장을 엄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가맹점에 더 큰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 해도 남의 일일 뿐이다. 굳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신용카드보다 현저하게 낮은 직불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들이 주로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하다 보니, 굳이 직불카드 결제를 위해 비밀번호 입력 기능(Pinpad)을 갖춘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직불카드 사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카드 사용자가 직불카드를 사용할 유인을 갖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지금은 오히려 신용카드의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될 정도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는 법 개정도 검토해봐야 할 단계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직불카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카드 사용액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불카드 사용액에 지금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현재 매년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감면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더 거둬들이는 세금을 가맹점들이 직불카드 결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사용토록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또 다른 방향은 수수료 결정 과정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카드결제시스템은 가맹점이 거래 카드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매출채권은 반드시 해당 카드회사에게 거래하도록 법에서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카드회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가맹점이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제 우리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 발행업무와 가맹점으로부터의 카드매출채권 매입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그나마 가맹점은 특정 카드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고객이

사용한 카드매출채권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주는 금융기관을 찾아 나설 수 있다. 물론 카드채권을 매입한 회사는 해당 카드를 발행한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양자가 모두 금융기관일 것이므로 좀 더 대등한 교섭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어, 그동안 블랙박스처럼 여겨지던 수수료 산정 내역이 한층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겨레 2011년 10월 25일자 '기고')

산업계 반발로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 기약 없어

신재생에너지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게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애초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정부도 처음엔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유럽국가들처럼 탄소세를 부과하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정이 이뤄지면 연간 9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녹색성장위원회도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60% 이상 적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산업계 반발에 따라 녹색 보다 성장논리가 우선하면서 정부 정책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간접규제 중 실효성이 가장 높다는 탄소세 도입은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과제에서 아예 사라졌다.

녹색위가 탄소세 대신 검토해온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의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매년 5조 6,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철강·정유·전자 등의 수출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반발에 따라 시행시기는 2015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한국일보 2011년 10월 21일자)

지방교육재정의 불편한 진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총규모 32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 중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복지부문이지만, 교육부문도 만만치 않다. 총 45조원으로 92조원의 복지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증가율은 12개 지출 부문 중 가장 빠른 9.3%다. 이 정도면 정부가 생색을 낼 만도 할텐데, 어찌 잘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의 현안인 복지 부문에 가리어서 그런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교육부문 예산이 올해에 비해 3.9조원 증액 편성됐지만, 이 중 80%가 넘는 3.2조원이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액이다. 법에 의해 내국세의 20.27%를 뚝 떼어내 지방교육감들에게 맡기는 돈이다. 물론 큰 틀의 제약은 있다.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하고, 그 내용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학교 시설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정부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재정 소요를 따져보기는 한다.

그런데 이상한 구석이 있다. 초·중등 교육에 쓰인다는 돈인데,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구도다. 초·중학교 학생은 각각 매년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교부금은 향후 5년간 매년 8%씩 늘어날 계획이다. 선생님들 처우를 잘해주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학교시설은 더 하다. 지역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다. 다른 부문에서는 부족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부문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았다.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도입이다. 교부금에서 총 1조 1,400억원을 들여 내년 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월 20만원씩을 제공해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취학연령을 1년 낮춰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설령 이번에 교부금의 유용한 사용처를 찾았다 해도 유치원 학생이 마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몇 년 못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또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교육부문이라도 왜 대학에는 쓰지 못할까. 집권 여당까지 나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말이다. 고령화 시대에 강조되는 평생교육에는 왜 이 돈이 쓰이지 못할까. 내년 예산에 평생교육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도 말이다. 아니 더 나아가 지금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왜 안 될까.

바로 법이 정한 칸막이 때문이다. 이 칸막이가 요긴할 때가 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교육을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칸막이 덕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무교육이 우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초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칸막이가 오히려 지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 이를 제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처럼 교육부문에 칸막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비록 예산의 세부지출내역은 교육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총량만큼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른 세출항목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 추세다.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 비효율,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돼 가고 있다.

(매일경제 2011년 10월 18일자 '기고')

• 2007 •

2007년 1월호(통권 제127호)

〈권두칼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최용선

〈현안분석〉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박노욱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원종학
-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김우철

〈정책토론포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2007년 중수출입관세를 어떻게 달라지나 외

〈정책흐름〉

2007년 경제운용방향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건물기준시가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2007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 외

2007년 2월호(통권 제128호)

〈권두칼럼〉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유일호

〈현안분석〉

- 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김종면
- 형평화보조금에 대한 논의/ 김현아

〈정책토론포트〉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역대 기업활동 활성화 위해 세제개혁 추진 외

〈정책흐름〉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

'07년 국제발행 및 국제시장 활성화 계획

'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원천징수 재산과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 결단해야 외

2007년 3월호(통권 제129호)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이란?/ 원윤희

〈현안분석〉

-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박형수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전병목

〈정책토론포트〉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도미니카공화국 간 FTA 발효 외

〈정책흐름〉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 보고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경제교류 전망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피난처 더 이상 설 곳 없다 외

2007년 4월호(통권 제130호)

〈권두칼럼〉

예산과정과 예산정치/ 신해룡

〈현안분석〉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 부담 비교/ 김진수
-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성명재

〈정책토론포트〉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정책연구〉

기업인수·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준규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성명재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

수·류덕현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영국소득·법인세 2%p 인하 외

〈정책흐름〉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근로장려세제(E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II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외

2007년 5월호(통권 제131호)

〈권두칼럼〉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박태규

〈현안분석〉

• 주택시장 가격정책에 대한 소고/ 노영훈

•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김진

〈정책연구〉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박순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안종석 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정훈·김현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일본 기업에 이중과세 철회 외

〈정책흐름〉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금년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EU FTA의 성공전략 외

2007년 6월호(통권 제132호)

<권두칼럼>

조세문화의 창달/ 이만우

<현안분석>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소고/ 안중석
-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 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정재호

<정책연구>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중석 · 홍범교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김승래

국제기본법 개편방안/ 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천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표

OECD, 경제전망 발표

<재정통계>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외

2007년 7월호(통권 제133호)

<권두칼럼>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이인실

<현안분석>

-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홍범교
- 기혼여성고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 김현숙

<정책토론포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해외동향>

일본의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

<정책연구>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외

<정책흐름>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개통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재정통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외

2007년 8월호(통권 제134호)

<권두칼럼>

개방과 국제환경의 변화/ 장근호

<현안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김현아
-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 최준욱

<정책토론포트>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신용카드에 의한 국제 납부제도 도입방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클린 에너지법, 美 하원 통과 외

<정책흐름>

경유 및 LPG 부탄 세율 조정 적용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7 지방세법 개정 추진

<재정통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화의 '해법' 주택연금 외

2007년 9월호(통권 제135호)

<권두칼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 김유찬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박 노욱
- 공무원 및 공직부문 임금 결정/ 원종학

<특별기획>

2007년 세제개편의 방향 및 주요내용/ 김낙희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Ⅰ)/ 이철인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Ⅱ)/ 전병목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日, 소비세 1%p 인상추진...연금재원 확보 위해 외

<정책흐름>

2007년 세제개편안

금년도 국제징수 실적 호조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재정통계>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외

2007년 10월호(통권 제136호)

<권두칼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김동건

<현안분석>

-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박상원
- 경쟁위탁(competitive sourcing)의 이해와 현황/ 김진

<특별기획>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

력 확충에 중점/ 김용호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2008년 예산안/

이원희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우석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美 재무 · 상무부, 인터넷서비스 과세 영구유예 요청

외

<정책흐름>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추진

2008년 국제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제수입 전망

‘세금부담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나...

지방세 비과세 · 감면현황 일제 조사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수익률 2%p 상승, 갈 길 먼 국민연금 외

2007년 11월호(통권 제137호)

〈권두칼럼〉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 유일호

〈현안분석〉

-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성명재
- 환경친화적 세계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전병목

〈특별기획〉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김 진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案 거부 외

〈정책흐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상속·중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금세금이 아니다 외

2007년 12월호(통권 제138호)

〈권두칼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온기운

〈현안분석〉

- 지방정부 재정위기관리에 대한 논의/ 김현아
-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민희철
-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민주 주자들 중산층 논쟁...오바마 과세확대 주장

에 힐러리 반대 외

〈정책흐름〉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2008년 경제전망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대선과 새해 예산안 외

2008년 1월호(통권 제139호)

〈권두칼럼〉

해안이 필요한 올해 경제전망/ 최홍식

〈현안분석〉

-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전병목
-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민희철

〈정책토론포트〉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성장 덕에 세수도 빠른 증가 외

〈정책흐름〉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이슈 & 포커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토끼잡기 3대 딜레마 외

2008년 2월호(통권 제140호)

〈권두칼럼〉

부동산정책과 실용주의/ 전형수

〈현안분석〉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손원익
-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박노옥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뎌면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외

〈정책흐름〉

2007년 국제징수 실적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자동차세 세율규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재정통계〉

조세체계의 변천 외

〈이슈 & 포커스〉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외

2008년 3월호(통권 제141호)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안종범

〈현안분석〉

-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김중현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전병철

〈정책토론포트〉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계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국가회계법」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 & 포커스>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

2008년 4월호(통권 제142호)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오연천
 <현안분석>
 •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김진수
 •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김 진
 •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박
 명호
 <정책토론포트>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외
 <정책흐름>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2008년 OECD 통계연보(FackBook) 발간
 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국세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슈 & 포커스>
 근로자가구 10% "일해도 빈곤층" 외

2008년 5월호(통권 제143호)

<권두칼럼>
 바람직한 신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김성태
 <현안분석>
 •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김승래
 •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
 제/ 우석진·조진권
 <정책토론포트>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정책연구>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박기백·박
 상원·손원익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박형수 외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김정훈·김현아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김재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1억 3천만가구에 세금 환급 외
 <정책흐름>
 '08. 1분기중 (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차 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재정통계>
 내국세 납세 인원 외
 <이슈 & 포커스>
 재정부 법인세는 낮춰도...소득세 인하 고려 안 해 외

2008년 6월호(통권 제144호)

<권두칼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민영화만이 해법인가?/ 김동진
 <현안분석>
 •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
 분배의 정책방향/ 성명재
 •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 전병목

•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 송호신
 <정책연구>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안종석·전병목
 출산을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
 책/ 우석진·민희철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노영훈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원중
 학·성명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
 승래·박명호·홍병교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중면·김우철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박명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유로존 재무장관, 유류세 인하 반대 외
 <정책흐름>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정책
 '08년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
 수제도 폐지를 2008. 6. 1. 시행함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재정통계>
 조세법칙 조사 실적 외
 <이슈 & 포커스>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 5년새 54.4% ↑ 외

2008년 7월호(통권 제145호)

<권두칼럼>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이만우
 <현안분석>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키드제도의 개선방향/ 김
 재진
 <정책토론포트>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정책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손원익 · 박대규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러시아 등 식량수출 규제 완화 외

〈정책흐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경제안정 종합대책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지방 미분양주택 취 · 등락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 · 서민층 유희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재정통계〉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하반기 경제운용〉 소득세를 1%p 인하되나 외

2008년 8월호(통권 제146호)

〈권두칼럼〉

활기찬 시장경제 정권교체 정체성에 길이 있다/ 배
병휴

〈현안분석〉

-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김중면
-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전병힐

〈정책토론회포토〉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해외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 세무환급 효과 반짝 외

〈정책흐름〉

주 · 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 현황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
영컨설팅 본격 착수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0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갑급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 · 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

지방재정에대한 공공증, 한 번에 푼다

〈재정통계〉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교육세 · 농특세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외

2008년 9월호(통권 제147호)

〈권두칼럼〉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로 정권 정체성 찾
아야/ 추창근

〈현안분석〉

-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박노욱
-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원종학
-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
분석/ 김지영

〈기획특집〉

2008년 세제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최영록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 / 손원익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I / 이 영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주택경기촉진법 시행 외

〈정책흐름〉

2008년 세제개편(안)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규칙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재정통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부동산 투기 잡는 데 세금 쓰
면 곤란" 외

2008년 10월호(통권 제148호)

〈권두칼럼〉

기본에 충실한 정책연구를 기대하며/ 전주성

〈현안분석〉

- 조세 ·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
친 영향 분석/ 성명재
- 국방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유인/ 김 진
-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박명호

〈기획특집〉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조규홍

2009년 예산안 평가 I / 박정수

2009년 예산안 평가 II / 송호신

〈정책토론회포토〉

2008년 세계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요국의 조세동향〉

중국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대한 세부요건 외

〈정책흐름〉

2009년 예산안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

알송달상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니다.

〈재정통계〉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유기환급금 지급시 GDP 0.05%↑" 외

2008년 11월호(통권 제149호)

〈권두칼럼〉

적극적 경가부양이 필요하다/ 온기운

〈현안분석〉

- 영국의 정부간 재원배분 현황과 시사점/ 안종석
- 정부지출의 국제비교/ 박기백
- 비권장재(merit goods) 관점에서 본 담배 · 주
류 · gambling 과세/ 박상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수혜엔 수상 감세안 발표 외

〈정책흐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한·미 양국간 통하스와프 체결
 납세협력비용 축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재정통계>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현황(1987~2001) 외
 <이슈 & 포커스>
 "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양극화 키운다" 외

2008년 12월호(통권 제150호)

<권두칼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정책/ 이인실

<현안분석>

- 전대미 현황과 정책과제/ 손원익
- 재정수지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김우철
- 카드결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후주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재진

<정책토론티포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의 조세동향>

아일랜드 2009 예산안 외

<정책흐름>

세법 개정에 따른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및 08년 주택분 중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

2008년도 조세감면액(잠정)

IMF, 아시아지역 경제성장 전망 발표

최근 감세안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2008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 분석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예산성자금, 지역주민에게도 지급한다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부과 외

<이슈 & 포커스>

4대 국책연구원장 경제전담 "위기상황 아래선 타이밍이 가장 중요" 외

2009년 1월호(통권 제151호)

<권두칼럼>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원윤희

<현안분석>

-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김한아
- 사회 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박노욱
-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김종면

<정책토론티포트>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해외동향>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해외동향>

독일의 2008/2009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주요국의 조세동향>

독일 상속세법 개정 외

<정책흐름>

2009년 경제운용방향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계획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재정통계>

법인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외

2009년 2월호(통권 제152호)

<권두칼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송대희

<현안분석>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 김우철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송호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전병철

<해외동향>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주요국의 조세동향>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외

<정책흐름>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2008년 국제징수 실적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유가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기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재정통계>

업종별 법인 수 외

<이슈 & 포커스>

"자본소득 세제 일원화를" 외

2009년 3월호(통권 제153호)

<권두칼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고/ 박완규

<현안분석>

-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진
-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박명호

<기획>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정책토론티포트>

주요국 국제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지급 조기배정

<재정통계>

법인세 환급금 외

<이슈 & 포커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장 1%p 올리려면 최대 20조 필요" 외

2009년 4월호(통권 제154호)

〈권두칼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한다/ 임주영

〈현안분석〉

- 가계소득구성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기여도 분석
Shorrocks 분해를 중심으로/ 성명재
-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조명환
- 양도소득 중과제도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박명호

〈정책연구〉

-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성명재 · 강신욱 · 이철인
-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성명재 · 박상원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김우철 · 이우진
- 경제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
- 간접투자세제의 개선방안/ 홍범교 · 김재진 · 김진수 · 전병목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김지영 · 박상원
-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전병목 · 박명호 · 김완석
-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조세회피방지 노력 외
- 〈정책흐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0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여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추가배정
-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외
- 〈이슈 & 포커스〉
탄소세 도입하고 환경세는 통합 외

2009년 5월호(통권 제155호)

〈권두칼럼〉

경제패러다임 시프트/ 김준영

〈현안분석〉

- 탄소세 도입과 경제적 효과/ 김승래
-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제도의 비교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정재호

〈정책연구〉

-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박노욱 · 원종학 · 김 진 · 박명호
-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박노욱 외
-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김정훈 · 김현아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김승래 · 박상원 · 김형준
-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안중석
- 〈정책토론포트〉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외
-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내년 재정목표 '위기 후 기회 선점 · 재정건전성 확보'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
-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외
- 〈이슈 & 포커스〉
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중과폐지 필요" 외

2009년 6월호(통권 제156호)

〈권두칼럼〉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강응선

〈현안분석〉

-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김정훈
- 골프장의 조세문제/ 노영훈

•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김재진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 · 재정정책/ 원종학 · 김중면 · 전병힐 · 우석진
-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재호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 조세 · 재정모의실험모형/ 성명재 · 전병목 · 전병힐
-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안중석 · 이상협 · 전영준 · 김진

〈주요국의 조세동향〉

-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 〈정책흐름〉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2009년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행정안전부, 고액 · 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 〈이슈 & 포커스〉
아이 안 날는 코리아 '재앙폭탄' 재각재각 외

2009년 7월호(통권 제157호)

〈권두칼럼〉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최홍식

〈현안분석〉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박노욱
-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서울시와 세계의 대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아

〈정책토론포트〉

-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 방안
-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 외부불경계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만 법인세 및 조세징수법 개정 외

〈정책흐름〉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117.5조원 집행, 목표 대비
106.8% 달성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외

〈이슈 & 포커스〉

조세감면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상회 외

2009년 8월호(통권 제158호)

〈권두칼럼〉

성급한 주택정책 전환은 시기상조/ 손재영

〈현안분석〉

-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김지영
-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김진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진수

〈정책토론포르트〉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외

〈정책흐름〉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한-인도 CEPA 현상결과 및 기대효과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재정통계〉

특별서비스에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법인·소득세 감세 유지하되 공제는 축소” 외

2009년 9월호(통권 제159호)

〈권두칼럼〉

녹색성장과 새 문화창달을 위하여 철도 투자는 확대되어야/ 김동건

〈현안분석〉

• 획률적인 전망 방법을 이용한 국가채무 전망/ 송호신

• 일반균형모형에서 Ramsey의 규칙에 대한 재해석/ 김형준

•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사례와 시사점/ 박명호

〈특집〉

서민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 안택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장근호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총평 중심으로/ 박상원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박명호

〈기고〉

재산평가에 대한 소고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재정통계〉

주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녹색성장 바람직한 세제개편은...” 외

2009년 10월호(통권 제160호)

〈권두칼럼〉

친서민 친기업은 동반관계/ 배병휴

〈현안분석〉

•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전병목

• 소득분배 동향 고찰/ 성명재

〈특집: 2010년 예산안〉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

요 내용/ 안일환

2010년 예산안 평가/ 홍승헌

〈정책토론포르트〉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중장기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

요 내용

2010년 국제 세입예산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재정통계〉

상속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외국기업, 한국은 세금으로 가장 힘든 나라 외

2009년 11월호(통권 제161호)

〈권두칼럼〉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 곽태원

〈현안분석〉

• 부담금 증가율 조절 및 연체 가산금제도에 대한 소론/ 정재호

•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원종학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외

〈정책흐름〉

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복권기금 10년 소외·취약계층에 7,600억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상설납세제도’ 도입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재정통계〉

상속세 결정 현황(2005~) 외

〈이슈 & 포커스〉

성장을 · 조세수입 전망 '들쭉날쭉' 외

〈권말부록〉

최근 5년간 『재정포럼』 총목차

2009년 12월호(통권 제162호)

〈권두칼럼〉

'땀뽀 세제' 를 만들기 위한 조건/ 안종범

〈현안분석〉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김승래
-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식감 분석/ 박상원
-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국제적 주택시장 동향 분석의 가능성/ 노영훈

〈정책토론포럼〉

제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정책흐름〉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2009년 국제감면 현황

재정조기집행,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

투기세력의 탈루소득!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이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

위택스에서 서울시 지방세도 신고 · 납부 가능

〈재정통계〉

증여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금 유통 · 관리, 거래소 설립 바람직 외

2010년 1월호(통권 제163호)

〈권두칼럼〉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최광

〈현안분석〉

- 보조금 정책에 대한 논의/ 김현아
- 포이즌필(Poison Pill)의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조세문제/ 김진수

〈정책토론포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주택구입 세액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 연장 외

〈정책흐름〉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

2010년 복지예산 최종 규모 및 주요 증액사업

2010년 예산 배정계획 및 집행지침 확정, 통보

2009년 세계개편안 국회 재정부 의결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 1. 1일 시행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재정통계〉

전화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임투공제 일몰, "반쪽짜리 연장" 외

2010년 2월호(통권 제164호)

〈권두칼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송대희

〈현안분석〉

-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노옥
-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홍승현
-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송호신

〈공공정책포럼〉

제회 공공정책포럼

〈주요국 조세동향〉

일본 세계개편안 주요 내용 외

〈정책흐름〉

2009년 국제징수 실적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일부 유럽 국가 재정위험 관련 영향과 대응방향

근무조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180만원 지원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재정통계〉

교통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공공기관 일자리 만들기 적극 나서야" 외

2010년 3월호(통권 제165호)

〈권두칼럼〉

국가부채 논란, 규모보다 관리능력이 관건/ 추창근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박명호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고선
- 주택시장과 경제위기: 주택금융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노영훈

〈해외동향〉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처 처벌/ 김유찬

〈정책토론포럼〉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공공정책포럼〉

국가 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의 2011년 예산안 외

〈정책흐름〉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율 도와드립니다

〈재정통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이슈&포커스〉

고용친화적 세계개편 절실 외

2010년 4월호(통권 제166호)

〈권두칼럼〉

재정 건전성 논쟁, 기초부터 튼튼하게/ 전주성

〈현안분석〉

-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성명재
-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 평가/ 송한재

〈정책토론포럼〉

제1차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 및 발전 방향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방안

<정책연구>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성명재 · 박기백 공공기관의 역할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 · 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성명재 · 전영준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안중석 · 정재호

담배 · 주류 · 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연구/ 박상원 · 민희철

저탄소 · 환경친화적 사경비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김승래 · 송호신 · 김지영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김승래 · 송호신 · 김우철

<주요국 조세동향>

싱가포르 2010년 예산안 외

<정책흐름>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원료

2010년 총액인건비제 개선 시행

4월 1일부터 달지는 조세제도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 ·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훈령 공개로 국제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 제고

2009년 귀속 단순 · 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재정통계>

지방세 시도별 분포 외

<이슈&포커스>

올해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호전 외

2010년 5월호(통권 제167호)

<권두칼럼>

공익활동에 필요한 민간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언/ 박대규

<현안분석>

• 메인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정재호

• 준예산 편성의 이슈/ 김중면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이은경

<정책토론포럼>

국가 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정책포럼>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우리의 노력

<정책연구>

소득세제와 의료수요/ 전병목 · 성명재 · 신현웅 · 신영석

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박명호 · 전병힐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박형수 · 류덕현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진중 · 대도시간 재정분권/ 김정훈 · 김현아

지방재정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욱 · 원종학

R&D 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지원 개선 방안/ 박노욱 · 송호신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심태섭

알기 쉬운 세법령 기초연구/ 김완석 · 김진수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의 고용지원법안(HIRE Act) 서명 · 발효 외

<정책흐름>
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금융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2010년 1/4분기 GDP

재정지출 수반 중 · 장기계획 협의지침 개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금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지방재정 조기집행 3월 말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이슈&포커스>
“공공부문 일자리 유연화로 고용창출 필요” 외

2010년 6월호(통권 제168호)

<권두칼럼>
국민 釜稅主義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조용근

<현안분석>
•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홍범교

•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 · 운영의 효과/ 송호신

<정책토론포럼>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니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정책포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조세동향>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 외

<정책흐름>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사항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 · 시행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부부문 평가 관련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이슈&포커스>

“기부확대 위해 美 모델 적극 도입하자” 외

2010년 7월호(통권 제169호)

<권두칼럼>

지방선거 결과와 과제/ 박완규

<현안분석>

•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 원종학

• 지방적 협약의 이슈와 시사점 미국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허경선

<기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김춘순

<정책토론포럼>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의 감면연장법안에 대한 논의 동향 외

<정책흐름>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세금관련 안내문 · 통지서를 전면 개선하여 납세편의 증진

“지방세·관세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 없는 지방세 관리
<재정통계>
 취득세(징수실적) 외
<이슈&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제·탄소세 정부 ‘단계적 도입안’ 검토 외

2010년 8월호(통권 제170호)

<권두칼럼>
 부동산과 하위이익/ 손재영
<현안분석>
 •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김진수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박노옥
<정책토론포럼>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주요국 조세동향>
 영국 긴급예산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간다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재정통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외
<이슈&포커스>
 개인소득자 소득탈루율 23.6% 외

2010년 9월호(통권 제171호)

<권두칼럼>
 개구리에 관한 단상/ 임주영
<현안분석>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분석/ 고선
 •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박명호
 • 해외부동산투자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노영훈
<특집>
 2010년 세계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안택순
 2010년 세계개편안 평가/ 조영환
<공공정책포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역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
<주요국 조세동향>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개정
<정책흐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계개편(안)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한-파나마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태풍 “곤파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 도입으로 징수 강화
<재정통계>
 GDP 대비 총조세 비중
<이슈&포커스>
 조세연 “복지지출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외”

2010년 10월호(통권 제172호)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제/ 김성태
<현안분석>
 •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주요 특징 및 요인별 분해/ 성명재
 • 경영평가제도와 공기업의 수익성/ 김지영

<특집>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문성유
 2011년 예산안 평가 및 정책과제/ 박형수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외
<정책흐름>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편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발간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년 세계개편안 수정사항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재정통계>
 OECD국가의 총조세수입 추이
<이슈&포커스>
 예산심의 ‘공정 리더십’ 발휘하길 외

2010년 11월호(제173호)

<권두칼럼>
 종합부동산세제와 헌법개정/ 현진권
<현안분석>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 정재호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과 인력관리 방안/ 라영재
<정책토론포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관리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of 2010) 외
<정책흐름>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국제시장 발전을 위한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3/4분기 추진상황 점검
 경차 타시면서 세금 절약하세요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

10. 9월 취업자 24.9만명 증가
 국제통계로 본 여성 납세자의 출산 현황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
<재정통계>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액
<이슈&포커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찬반' 논쟁 외
<권말부록>
 최근 5년간 '재정포럼' 총목차

2010년 12월호(제174호)

<권두칼럼>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의 추진을/ 구정모
<현안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이은경
 • 국제조세회피 방지 관련 정보교환 논의와 현안과제 / 홍범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허경선
<정책토론포럼>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공공정책포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이탈리아, 피자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외
<정책흐름>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 내용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동향 및 대책
 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예고
 신·재생에너지 기저재에 대한 관세감면품목 확대
 OECD, 경제전망 발표
 지자체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협조 요청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총 조세세 수입 변동 추이
<이슈&포커스>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법인세 4% 감면해야 외

2011년 1월호(제175호)

<권두칼럼>
 세부담의 공평성과 세무행정/ 원윤희
<현안분석>
 • 재정간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송호신
 •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책방향/ 김지영
 •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원종학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숙단계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요국의 조세동향>
 일본의 2011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외
<정책흐름>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대폭 개편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사업하기 편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 외
<이슈&포커스>
 재정을 살찌게 하려면 외

2011년 2월호(제176호)

<권두칼럼>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넘어/ 송대희
<현안분석>
 • 기업기부금의 지방성 실태조사/ 손원익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가: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명호
<정책토론포럼>
 재정통계 개편안
<공공정책포럼>
 글로벌 위기 대응과 미래전략
<주요국의 조세동향>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 외
<정책흐름>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10년 국제징수 실적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한-오스트리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개정
 타결
 제2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FAC)」출범
 한-인도 CEPA 발효 후 1년의 성과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외
<이슈&포커스>
 "법인세 5%P 감세로 GDP 0.4~1.2% 증가" 외

2011년 3월호(제177호)

<권두칼럼>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 전주성
<현안분석>
 • 사회적 기업과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 조세징수 도급(Tax Farming)의 역사와 배경/ 고선
 •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변화추이 분석/ 성명재
<공공정책포럼>
 공기업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독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 채택 외
<정책흐름>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과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2011년도 국민 인식조
 사 결과
 관세법 시행령·규칙 및 관세사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2011년 상속·증여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틈탄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유출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원천징수세 비중 외
<이슈&포커스>
 "세금이 공정사회 핵심 ... 제과제는 과세 형평성 높
 이기" 외

2011년 4월호(제178호)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에 관하여/ 곽태원

〈현안분석〉

- 재정·정치제도의 재정성과에의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홍승현
- 조세·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과학화 필요성/ 송헌재

〈정책토론포럼〉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공공정책포럼〉

서민의 신용자산 지키미 KAMCO

〈KIPF 논문공모 수상작〉

담배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비선형의 담배수요함수 추정과 암묵적 비용모델링/ 강효석

왜 세금을 내는 걸까?/ 오형석

〈주요국의 조세동향〉

그리스 세제개편, 투자촉진법 및 탈세방지법 발표 외

〈정책흐름〉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
2010년 중앙정부 관리대상수지 13.0조원 적자
2011년 제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 외

〈이슈&포커스〉

학력 높을수록 납세의식은 '뺑뺑' 외

2011년 5월호(제179호)

〈권두칼럼〉

오류와 정론/ 손재영

〈현안분석〉

-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손원익
- 자본소득과세에 관한 소고/ 홍범교

〈정책토론포럼〉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안종석 외

정치구조가 조세·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박상원·성명재·송호신·전병힐·조명환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이홍식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김승래·류덕현

〈KIPF 논문공모 수상작〉

통일세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문준호·민동준·이치영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의무화 외

〈정책흐름〉

국고보조사업, Zero-base에서 존치 여부 평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관세법 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외

〈이슈&포커스〉

빛데미 공기업 어떻게 볼 것인가 외

2011년 6월호(제180호)

〈권두칼럼〉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 김완석

〈현안분석〉

- 선진국의 의료부문 재정 건전화 정책/ 이은경

〈공공정책포럼〉

선진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

〈정책연구〉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김승래·김지영

유기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송헌재·성명재·고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자원 조달 연구/ 고선·김진영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 박형수·송호신

발생주의회계 및 비용회계와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 박노옥·박형수·송호신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이은경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김승래·김지영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안종석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외

〈정책흐름〉

공공기관 경영실적 호전으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2011년 1/4분기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외

〈이슈&포커스〉

"지방세 체납징수, 제한적 민간위탁해야" 외

2011년 7월호(제181호)

〈권두칼럼〉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위한 제언/ 김성태

〈현안분석〉

-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박형수
-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원중학

〈공공정책포럼〉

2020 Vision과 KEPCO Way

〈정책연구〉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노영훈

한법과 재정/ 김정훈·박형수·김종면·최준욱·김현아·홍승현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최준욱·송헌재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김정훈

유효법인세를 측정과 법인세를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이영·조명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모형 연구/ 이영·전병hil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및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이준규·김문철·박상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손원익·이순태·박세경

〈주요국의 조세동향〉

뉴질랜드의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2011년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재정통계〉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이슈&포커스〉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평균의 1.2배 외

2011년 8월호(제182호)

〈권두칼럼〉

고용창출에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정구정

〈현안분석〉

•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김진수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 노영훈

〈정책토론포럼〉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과제도 개편방향

〈공공정책포럼〉

영국 공공기관의 Value For Money 혁신의 경과와 시사점: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김진수 외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완석·정지선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익

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심태섭

〈주요국의 조세동향〉

프랑스의 구글세 도입 계획 철회 외 외

〈정책흐름〉

과일 및 채소류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과세 인하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수준 및 절차, 국제 수준으로 정비

〈재정통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이슈&포커스〉

[시론] 자본에 대한 따뜻한 과세 외

2011년 9월호(제183호)

〈권두칼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염명배

〈현안분석〉

•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 허경선

• 조세·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 성명재

〈특집〉 2011년 세제개편안

2011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임재현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박명호

〈정책토론포럼〉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제행정의 역할과 과제

〈공공정책포럼〉

한국경제 10대 Shocks

〈주요국의 조세동향〉

OECD의 VAT 중립성 지침 발표 외

〈정책흐름〉

2011년 세법개정안

취약계층 일자리와 수급자 복지 대책 추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추석 전 영세 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교세·감면 개편 추진

지방재정위기 사전예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통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이슈&포커스〉

OECD 80%가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외

2011년 10월호(제184호)

〈권두칼럼〉

2012년 예산안을 통해서 본 향후 정책과제/ 박태규

〈현안분석〉

•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송헌재

• 서비스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 손원익

•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추정법의 한계 및 탈세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명호

〈특집〉 2012 예산안

2012년 예산,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최상대

2012년 예산안 평가/ 송호신

〈공공정책포럼〉

2011년 경영평가결과 분석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 발표 외

〈정책흐름〉

'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안)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년 7월(누적)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잠정)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재정통계〉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1961~2009) 외

〈이슈&포커스〉

日 보다 빠른 '한국 고령화' ...2026년 인구 21%가 노인 외

이 내용들의 원문들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포럼

2011년 11월호 통권 제18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11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11호(통권 제18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